

현안분석 2006-

법령용어 □□

국회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 학 선

강 현 철

국회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Study on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the Parliament Code

연구자 : 전 학 선(광운대 법대 교수)

Jeon, Hak-Seon

강 현 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ang, Hyun-Cheol

2006. 8.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법률의 내용과 용어, 그 표현방법이 어렵고 원인으로서는 우선 일본식 표현, 난해한 한자어, 비문법적인 표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의 현행 법제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법문화를 계승발전한 것도 아니며 우리의 자주적 결정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법제를 수용한 것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통한 타율적인 법의 수용이었다. 이러한 일제에 의한 강제적인 법수용은 아직도 우리의 법문화, 법학교육, 실정법체계의 내용과 형식에 많은 영향을 가져오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법의 정립은 그 국가의 언어, 풍습, 가치관과 같은 그 국가의 고유한 문화위에서 이루어 질 때 그 법률은 국민생활에 널리 적용될 수 있으며, 법규범이 생활규범으로서 정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는 우리의 언어생활과 언어감각과는 전혀 다른 일본의 법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말과 우리말은 여러 가지 풍습이나 전통, 가치관 등에 의하여 언어감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입법기술상의 편리함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일본의 법률개념과 용어를 남발하여 국적불명의 법률을 양산한 것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일본의 법언어로 형성된 우리 법제가 우리의 언어감각을 둔하게 하고 결국 일반국민들이 법을 대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법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법령중에 난해한 한자어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물론 전문적인 법개념인 경우 그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한자를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보통명사에게까지 난해한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어서 우리 고유의 한글은 단지 조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1948년

10월 9일 법률 제6호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모든 공문서는 한글을 전용하되 얼마동안은 한자를 병용하도록 하였고, 1961년 10월 1일에는 각령 제137호로 정부공문서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공문서는 한글을 전용하되 법령은 여전히 한문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나 1969년 5월 2일에 정부공문서규정을 개정하여 법률을 제외한 법령도 한글을 전용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의 법령이 한글로 표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률에 관해서는 아직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른바 헌법·민법·형법·상법 등 국가법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법규범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에서조차 난해한 한자어가 표기되어 국민의 법생활을 둔감하게 하고 있다. 일상언어와 법언어의 간격이 넓어짐으로써 법이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법전상의 난해한 법언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음미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령문의 문장구조와 문체에 있어서도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난해한 문어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회법을 중심으로 하고, 참고자료로서 국회관련법률 등을 포함하여, 법령에서 잘못 사용된 단어와 문장은 물론 문법에 맞지 않는 법문의 표현, 일본식 표현 등을 지적하여 순화 및 정비에 관한 의견을 보여주고자 한다.

※ 키워드 : 국회, 국회법, 법령용어, 용어순화, 법언어학

Abstract

This report is study on comparison,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Korea of the Parliament Code. This report don't standardize theory about law but terminology and sentence in Korea of the Parliament Code. The Parliament Code function in general law of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ve an effect all of parliamentary. But Korea National Assembly Law and terminology and sentence come under the influence of Japan according as succession in Japan Law like another. For this reason, terminology and sentence in National Assembly Law need to do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Therefore, This report describe about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National Assembly Law, organization law of National Assembly etc. This report will suggest solutions for those parts to be purified in Korea National Assembly Law : inappropriate use of terms, ungrammatical sentences, and mistakes in word spacing. This report will serve as a useful guide for purification of the terminology and sentences in Korea National Assembly Law.

※ Keywords : Korea National Assembly Law, the Parliament Code, Terminology Purification, Sentences Purification, language and law

목 차

국문 초록	3
Abstract	5
I. 서론	9
II. 국회법 개관	13
III. 법령순화정비방안	17
1. 한자의 순화	17
2. 일본식 용어의 순화	18
3. 문장의 순화	19
(1) 주어가 생략된 경우	19
(2) 능동과 피동의 순화	19
(3) 조사의 순화	19
(4) 명사구 문장의 순화	20
(5) 문어체 문장의 순화	20
IV. 국회법 순화안	23
▣ 부록 《순화조문대비표》	
1. 국회법	139
2. 국회도서관법	201

3. 국회 사무처법	205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11
5. 국회 예산정책처법	217
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221
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23

I. 서론

인간이 살아가면서 혼자서는 살수 없으므로 사회를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다.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계속에서 충돌 혹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규범이다. 따라서 규범은 인간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질 수 있는데, 이러한 규범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은 인간사회에서 다툼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고 국가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행동규율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법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률용어라는 것도 전문용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른 일반적인 용어와 표현들처럼 쉽게만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쉽게 서술될 필요는 있다.

법은 결국 해당국가의 언어와 문자를 통하여 성문화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言語를 떠나서는 실정법적인 각종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이 추출되는 것은 전부 言語라는 방적기 위에서 행해진다. 言語는 법학자 유일의 도구이며, 법률은 언어라는 가면을 쓰고 등장하고 있다. 법학은 언어의 학문의 하나로서, 모든 실정적 제정법은 언어에 의한 구속을 받으며, 법개념이나 법관념이 존재하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이며, 또한 언어 속에 있다. 즉 법은 말해지는 것이며, 이는 판결 즉 법의 선언 또는 평결이나 재판관을 통하여 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법도 언어를 통하여 비로소 자기자신을 표현한다. 법은 사회와 더불어 역사가 오래되며 사회는 언어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즉 인간사회가 인간의 사회로서

1. 서론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그 성원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체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법이 있는』 곳의 전제가 되는 『사회』는 그 자체 나아가 『언어』를 전제로 하거나 적어도 그 『사회』는 『언어사회』로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언어와 법의 결부는 문학작품보다 더욱 밀접하다. 그 이유는 언어는 보통으로는 사념을 표현하는 것이나, 법은 각종 개념을 다루기 때문이다. 사념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나 법개념은 엄밀한 언어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법언어는 규범적 기호이며 이는 서술적 기호와는 달리 언제나 사람과 사람사이의 정당한 질서상태와 관련한 의미를 담고 있다. 언어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향이 강한 우리 문화에서는 언어와 법의 사이에는 대단히 엄밀한 결부가 있으며, 일방이 타방에 상호영향을 미친다. 실정법(법률)은 언어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표현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법은 언어와 의사소통의 사회적인 일대체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¹⁾

따라서 성문화 된 법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잘못된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는 법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잘못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이는 법의 규율대상인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단어사용과 정확한 문장구조, 명확한 표현 등이 필요하다. 이는 언어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표현은 간략·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명확하게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법률의 내용과 용어, 그 표현방법의 면에서 난해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된 요인으로는 우선 일본식 표현, 난해한 한자어, 비문법적인 표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의 현행

1)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 용어정비를 위한 기초이론 -』, 한국법제연구원, 1995. 7, 11-12면.

법제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법문화를 계승발전한 것도 아니며 우리의 자주적 결정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법제를 수용한 것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통한 타율적인 법의 수용이었다. 이러한 일체에 의한 강제적인 법수용은 아직도 우리의 법문화, 법학교육, 실정법체계의 내용과 형식에 많은 영향을 가져오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법의 정립은 그 국가의 언어, 풍습, 가치관과 같은 그 국가의 고유한 문화위에서 이루어 질 때 그 법률은 국민생활에 널리 적용될 수 있으며, 법규범이 생활규범으로서 정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는 우리의 언어생활과 언어감각과는 전혀 다른 일본의 법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말과 우리말은 여러 가지 풍습이나 전통, 가치관 등에 의하여 언어감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입법기술상의 편리함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일본의 법률개념과 용어를 남발하여 국적불명의 법률을 양산한 것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일본의 법언어로 형성된 우리 법제가 우리의 언어감각을 둔하게 하고 결국 일반국민들이 법을 대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법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법령중에 난해한 한자어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물론 전문적인 법개념인 경우 그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한자를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보통명사에까지 난해한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어서 우리 고유의 한글은 단지 조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1948년 10월 9일 법률 제6호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모든 공문서는 한글을 전용하되 얼마동안은 한자를 병용하도록 하였고, 1961년 10월 1일에는 각령 제137호로 정부공문서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공문서는 한글을 전용하되 법령은 여전히 한문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나 1969년 5월 2일에 정부공문서규정을 개정하여 법률을 제외한 법령

1. 서론

도 한글을 전용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의 법령이 한글로 표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률에 관해서는 아직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른바 헌법·민법·형법·상법 등 국가법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법규범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에서조차 난해한 한자어가 표기되어 국민의 법생활을 둔감하게 하고 있다. 일상언어와 법언어의 간격이 넓어짐으로써 법이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법전상의 난해한 법언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음미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령문의 문장구조와 문체에 있어서도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난해한 문어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회법을 중심으로 하고, 참고자료로서 국회관련법률 등을 포함하여, 법령에서 잘못 사용된 단어와 문장은 물론 문법에 맞지 않는 법문의 표현, 일본식 표현 등을 지적하여 순화 및 정비에 관한 의견을 보여하고자 한다.

2) 박영도, 일본어식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01. 4, 13-15면.

II. 국회법 개관

국회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에서도 제3장에서 구회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법은 1948년 10월 20일 법률 제5호로 제정되어 2006년 10월까지 40번이 개정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2006년 2월 21일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회법 [제정 1948.10.2 법률 제5호]

국회의 구성 및 의사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헌법의 개정으로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가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로 됨에 따라 이 법을 전면 개정하여 양원제 운영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3. 국회법 [폐지제정 1963.11.26 법률 제1452호]

구헌법에 의거 제정된 양원제 국회법을 개정헌법에 부합하도록 단원제 국회법으로 새로이 제정하여 신국회의 최초집회와 동시에 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개선함으로써 능률적인 국회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4. 국회법 [전문개정 1973.2.7 법률 제2496호]

유신헌법에 따라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국회운영을 도모하여 합리적 의회주의의 확립을 기하기 위하여 의안의 효율적 처리등 국회운영의 합리화와 의원의 긍지와 품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II. 국회법 개관

5. 국회법 [전문개정 1981.1.29 법률 제3360호]

의원의 직은 각계의 전문가가 겸직할 수 있도록 겸직범위를 넓히고, 의원의 의견은 회의에서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민의를 대변·반영할 수 있게 하며, 의원은 국정을 논함에 있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6. 국회법 [전문개정 1988.6.15 법률 제4010호]

- ①정기국회의 회기일수를 100일로 연장함에 따라 정기회의 집회일을 10일 앞당겨 9월 10일로 함
- ②연중 총회기일수는 15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함
- ③정부에 대한 보고·서류제출요구나 증인·감정인·참고인등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④국회의사활동에 관한 TV등의 중계방송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일반국민에게 개방함

7. 국회법 [일부개정 2005.7.28 법률 7614호]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의원석방요구안의 요건을 강화하여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방지하며,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8. 국회법 [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음

1948년 처음 제정되었을 때에는 105개조의 간략한 법률이었으나, 지금은 170여개가 넘는 조문으로 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법률이다. 제정 이후 지금까지 40차례나 개정되었으나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그

영향을 받아서 크게 전면개정이 되었다. 1948년 이후 지금까지 일반인들의 언어습관과 문장습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문법도 면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데에 발마추어 국회법도 손질할 필요가 있고 너무 어렵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은 쉬운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06년 6월 현재 시행중인 2006년 2월 21일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된 국회법을 순화작업을 통하여 용어정비를 하고자 한다.

Ⅲ. 법령순화정비방안

1. 한자의 순화

우리나라는 주로 중국을 통하여 외래문화와 접촉하고 이를 섭취하여 왔다. 그리고 학술용어, 전문용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대개 한자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다. 법률적인 언어의 창조도 말할 것도 없이 한학에 소양 있는 자가 한자라는 표의문자를 사용하고 한자에 의하여 원어의 의미내용을 대체로 표현한 것이나 그곳에는 단기간에 적어도 지식층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이해되어 정착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용어에는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하여 한자의 사용이 많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일반인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법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혹은 입법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한자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한글이나 우리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없는 한자어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과 법규범 사이에 표리관계가 형성되어 법률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법적 생활에 있어서 항상 불안감을 형성하게끔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용어를 한글로 바꾸는 것이 또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한자어로 된 것을 한글로 바꾸는 경우에 오히려 뜻이 모호해지거나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혹은 그 표현이 부드럽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일본식 용어의 순화

아울러 우리나라는 언어구조가 비슷하고 한자를 공용하는 일본의 압도적인 영향아래에서 법적으로 근대화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이 서구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한발 앞서 만들어진 법률용어와 법기술이 검토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직수입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어로서 만들어진 번역식 법률용어가 거의 그대로 우리의 법학과 법실무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에서 만들어진 법률용어의 수용은 우리말을 풍부하게 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률용어라 할지라도 訓讀이 있는 일본어에서와 音讀밖에 없는 한국어에서는 국민일반의 이해도가 같을 수 없다. 언어적으로도 법이 국민생활로부터 유리되었다는 지적이 일본에도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의 법생활로부터 법의 유리가 한층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법률용어의 대부분이 조어자의 원어 이해의 정확도, 일단 만든 번역어의 수용도, 나아가 그 정착도라는 면에서 대체로 현재 우리 사회에 충분히 정착되어 우리의 언어감정과 일치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미 독일에 있어서 로마법의 수용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법률용어의 과도한 외국화」와 「일반국민의 법으로부터의 소외」가 우리의 경우에도 거의 그대로 해당되고 있는 실정이다.³⁾

예를 들어 일본어는 명사와 명사 사이를 반드시 ‘の’로 연결시키며, 3번까지의 ‘の’가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우리말은 명사와 명사 사이의 ‘~의’를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의’가 2회 이상 반복되어도 부자연스러워진다. 따라서 ‘~의’를 생략하면 수식관계가 불분명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3) 박영도, 일본어식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01. 4, 11-12면.

3. 문장의 순화⁴⁾

(1) 주어가 생략된 경우

문장성분을 생략하는 경우는 그 성분을 생략하더라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한다. 앞에 나온 문장성분이라도 그것이 생략되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뜻이 불분명해지는 문장에서는 문장성분을 생략할 수 없다. 국회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에서는 이러한 문장성분, 특히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법조문에서의 주어는 그 조문이 상정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주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조문에서는 가급적 주어를 갖출 필요가 있다.

(2) 능동과 피동의 순화

능동과 피동의 표현은 법조문에서 자주 사용된다. 피동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로 나타내어진 인물이나 사물이 제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동에 의해 되는 행위를 말하고, 능동은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는 행위나 동작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문장에서는 피동과 능동이 잘못 쓰이거나 뒤섞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3) 조사의 순화

법률의 조문 중 조사가 잘못 사용된 유형으로는 부정확한 조사를 쓴 경우, 조사를 무리하게 생략한 경우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에도 불구하고’를 ‘~에 불구하고’ 라고 쓰거나, 여격 조사 ‘~에게’를 ‘~에’로

4) 류창호, 민법 개정안의 법률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3. 8, 97면 이하 참조.

Ⅲ. 법령순화정비방안

쓴 경우, 주격 조사 ‘~이/가’를 관형격 조사 ‘~의’로 쓴 경우 등이 특히 빈번하다.

법조문에서 주어는 그 조문에서 상정하고 있는 행위의 주체를 의미하므로, 분명히 나타내어야 한다. 이러한 주어임을 분명히 해주는 문장성분이 바로 주격조사이다. 그러나, 실제 국회법조문에서는 주격조사를 불분명하게 사용하거나 생략하는 예가 많다.

법조문에서는 주어의 위치에 관형격 조사인 ‘의’를 사용하여 주격조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잦다. 이 경우의 ‘의’는 주격조사로 고쳐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오류는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의+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주술호응은 의미파악은 가능하지만 그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국회법조문에서는 주격조사를 생략한 경우가 빈번하다. 부정확한 주격조사를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격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주체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나 어색한 문장이 되기 쉽다.

(4) 명사구 문장의 순화

국회법에서도 체언형의 문체로 명사구가 많이 쓰이고 있어 법률문장을 더욱 딱딱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명사구 문장을 동사구로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부드러운 표현이 될 수 있다. 민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명사구 표현은 ‘~음을’, ‘~르 것을’, ‘~함에는’ 등이 있다.

(5) 문어체 문장의 순화

국회법 조문에는 현재에는 잘 사용되지 않은 문어체 문장이 눈에 많이 띈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국회법의 입법 당시의 언어습관과 이에 따른 입법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어체의 법

조문은 일반국민들이 범규범을 멀리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판결문과 학자들의 논문에서도 이러한 국회법의 문체를 모범으로 하여 문어체 문장을 답습함으로써 그 사회의 언어환경과 다른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따라서, 문어체로 된 법조문은 가급적 평이하고 일상적인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국회법 순화안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화안]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함’이란 표현을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일반 국민들에게 법조문이 이질적이라는 느낌을 줌으로써 딱딱하고 권위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규정함으로써’는 ‘규정하여’로, ‘기여함’은 ‘기여하는 것을’로 바꾸는 것이 보다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2 조 (당선통지 및 등록)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 2 조 (당선알림과 등록)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당선인이 결정되면,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알려야 한다.
②국회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내보이고 등록하여야 한다.

‘통지’란 일정한 사실,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지’도 우리말로 ‘알림’이란 표현이 있으므로 알림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통지하다’도 ‘알리다’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제시’도 서류 기타 물건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어떤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굳이 우리말로 바꾸자면 ‘내

IV. 국회법 순화안

보임'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시하고'는 '내보이고'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제 3 조 (의석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순화안] 제 3 조 (자리배정)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자리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정하다’란 동사는 타동사이므로 위 문장에서 목적어인 의석을 가리키기 위하여 ‘이를’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표현의 순서를 바꾸면 불필요한 ‘이를’이란 표현을 사용 안해도 된다.

제 4 조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순화안] 제 4 조 (정기회) 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정기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날에 개최한다.

‘정기회’는 주어로서의 능동성에 문제가 있음으로 주체인 ‘국회는’을 표시하여 법문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 5 조 (임시회) ①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③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전 5일까지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순화안] 제 5 조 (임사회) ①임사회에 대한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날짜 3일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집회날짜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③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사회는 의원의 임기개시후 7일에 집회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전 5일까지 집회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된다.

‘임사회의 집회요구’란 표현은 사이의 ‘~의’보다는 ‘임사회에 대한 집회요구’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집회한다’의 주어는 ‘임사회’이므로 ‘집회한다’란 표현 보다는 ‘집회된다’란 표현이 주어와 동사의 서술관계에서 더 정확할 것이다.

‘기일’이란 어떤 행위가 행하여지거나 어떤 사실이 생기게 될 일정한 시점 또는 시기를 말한다. ‘기일’은 특정한 구체적인 일을 의미하므로 ‘날짜’로 바꾸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집회기일’이란 표현도 ‘집회날짜’란 표현으로 바꾸어도 무방할 것이다.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제 5 조의2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 ①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IV. 국회법 순화안

1.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주)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순화안] 제 5 조의2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 ①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그)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1.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예외로 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주)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로도 바꿀 수 있다.

‘작성한다’는 타동사이므로 주어가 행위자가 되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 위 문장에서 주어는 ‘국회운영기본일정’이므로 ‘작성된다’로 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⁵⁾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⁶⁾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 5 조의3 (법률안제출계획의 통지)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5) 김희진, 법률용어와 법률 문장의 바람직한 순화 방안,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국가 기관 합동회의, 국회법제실, 2004. 4. 7, 109면.
6) 김동욱, 일본어학의 관점에서 본 우리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 248면.

IV. 국회법 순화안

[순화안] 제 5 조의3 (법률안제출계획의 알림)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그)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알려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알려야 한다.

‘통지’란 일정한 사실,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지’도 우리말로 ‘알림’이란 표현이 있으므로 알림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통지하다’도 ‘알리다’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로도 바꿀 수 있다.

제 7 조 (회기) ①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국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 7 조 (회기) ①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여지며,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국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정해져야 한다.

‘~하되’는 그 다음에 앞 문장과 대립되는 표현이 나오는 보통이고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정하다는 타동사이므로 수동형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여지며,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옳바르다.

제 9 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

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기간으로 한다.

[순화안] 제 9 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기간이다.

법령에서 임기와 관련하여 ‘~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간당 명료하게 ‘~이다’로 고칠 수가 있다.

제12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순화안] 제12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의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이란 표현은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 누구인가를 보면 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므로 ‘의장이’라는 표현보다 ‘의장에게’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도 ‘소속단체소속 부의장’으로 고치는 것이 더 부드러운 표현이다.

제13조 (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IV. 국회법 순화안

[순화안] 제13조 (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임시의장으로 하여금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이란 표현은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 누구인가를 보면 의장과 부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므로 ‘의장과 부의장이’라는 표현보다 ‘의장과 부의장에게’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표현도 누구에게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정확한 표현이 없으므로 ‘임시의장으로 하여금’이란 표현을 넣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제14조 (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국회의원총선거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

[순화안] 제14조 (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국회의원총선거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일본어는 명사와 명사 사이를 반드시 ‘の’로 연결시키며, 3번까지의 ‘の’가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우리말은 명사와 명사 사이의 ‘~의’를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의’가 2회 이상 반복되어도 부자연스러워진다. 따라서 ‘~의’를 생략하면 수식관계가 불분명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시회의 집회공고’도 ‘임시회 집회공고’로 바꾸는 것이 부드러운 표현이다.

제15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순화안] 제15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된다.

③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선거는 …… 실시하다’란 표현은 실시되는 것이 선거이므로 선거를 주어로 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된다’로 하여야 한다.

‘선거하되’의 주어는 선출되는 당사자인 의장과 부의장이므로 ‘선거하되’란 표현은 부정확한 표현이고 ‘선출되며’로 바꾸어야 한다.

제16조 (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순화안] 제16조 (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바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IV. 국회법 순화안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 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 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제17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순화안] 제17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선거하되’의 주어는 선출되는 당사자인 임시의장이므로 ‘선거하되’란 표현은 부정확한 표현이고 ‘선출되며’로 바꾸어야 한다.

제21조 (국회사무처) ①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④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⑦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순화안] 제21조 (국회사무처) ①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③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 ④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⑥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⑦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특정대상을 향하거나 대상과 관련짓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로 일본법령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에게’로 고쳐야 할 것이다.

‘이 법에 정한 외에’란 표현도 부드럽지 못하므로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22조 (국회도서관) ①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 ②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③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 ④도서관장은 국회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행한다.
 - ⑤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순화안]** 제22조 (국회도서관) ①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 ②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③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IV. 국회법 순화안

- ④도서관장은 국회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행한다.
⑤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법에 정한 외에’란 표현도 부드럽지 못하므로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23조 (국회의 경비) ①국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②의장은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다만, 예산회계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기일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소관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소관예산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예산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④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다만,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으로 지출하고 다음 회기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정부가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소관세출예산요구액의 삭감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삭감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국무회의 7일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가 있을 때에는 그 삭감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당해국무회의 1일전까지 정부에 송부한다.

[순화안] 제23조 (국회의 경비) ①국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계산하여 올린다.

- ②의장은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다만, 예산회계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날짜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소관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소관예산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예산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④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다만,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고 다음 회기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정부가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소관세출예산요구액의 삭감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삭감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국무회의 7일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가 있는 때에는 그 삭감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당해(그)국무회의 1일전까지 정부에 보낸다.

‘계상’이란 예산에 편성하거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계상하다’는 ‘계산하여 넣다’, ‘계산하여 올리다’ 또는 ‘셈에 넣다’ 등의 용이한 표현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여도 무난할 것이다.

‘이를’은 앞의 국회의 경비를 지칭하므로 불필요하므로 삭제한다.

‘기일’이란 어떤 행위가 행하여지거나 어떤 사실이 생기게 될 일정한 시점 또는 시기를 말한다. ‘기일’은 특정한 구체적인 일을 의미하므로 ‘날짜’로 바꾸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제출기일’이란 표현도 ‘제출날짜’란 표현으로 바꾸어도 무방할 것이다.

‘승인으로’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출한다는 의미이므로 앞 문장과 같이 ‘승인을 얻어’로 바꾸어야 한다.

‘송부’는 어떤 장소나 사람으로부터 다른 장소나 사람에게 서류 기타 물건을 보내는 것을 말하며, 보내는 것을 ‘발송’이라 하고, 받는 것을 ‘도달’이라고 하는데, 송부라 하면 보통 발송으로부터 도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송부하다’라는 단어 대신 ‘보내다’, ‘부치다’, ‘발송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로도 바꿀 수 있다.

IV. 국회법 순화안

제26조 (체포동의요청의 절차) ①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순화안] 제26조 (체포동의요청의 절차) ①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바로 그 사본을 덧붙여서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⁷⁾

‘첨부(添附)’는 어떤 대상에 대상을 더하여 붙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순우리말로 순화하는 경우 ‘덧붙여서’로 할 수 있다.

제27조 (의원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순화안] 제27조 (의원체포의 통지(알림))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바로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덧붙여서 이를 알려야 한다. 구속기간이 연장된 때에도 같다.

7)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

‘통지’란 일정한 사실,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지’도 우리말로 ‘알림’이란 표현이 있으므로 알림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통지하다’도 ‘알리다’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행위를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라는 표현은 일본법령문에서 흔히 쓰이는 ‘有ス’나 ‘在ル’를 번역한 것인데 우리말의 어법상으로는 어색한 표현이 된다.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려면 ‘있다’를 쓰지 않고 바로한자 어근에 접사 ‘하다’ 또는 ‘되다’를 결합하여 용언화하거나 조사를 붙여 사용하거나 다른 어휘로 바꾸거나, 아예 생략하는 것이 좋다.⁸⁾ 따라서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를 ‘구속기간이 연장된 때에도’로 바꾸는 것이 좋다.

‘또한’은 굳이 없어도 되므로 생략한다.

‘첨부(添附)’는 어떤 대상에 대상을 더하여 붙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순우리말로 순화하는 경우 ‘덧붙여서’로 할 수 있다.

제29조 (겸직) ①의원은 정치활동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8) 김동훈, 회사법상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상사법상의 법령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4. 6, 132면.

2. 대통령 · 헌법재판소재판관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지방의회의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 · 직원
 5.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임 · 직원
 6. 정당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 ②의원이 당선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에 그 직에서 해직된다.
- ③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을 휴직된다.
- ④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이내에, 임기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⑤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순화안] 제29조 (겸직) ①의원은 정치활동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대통령 · 헌법재판소재판관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지방의회의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 · 직원
 5.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임 · 직원
 6. 정당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 ②의원이 당선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에 그 직에서 해직된다.
- ③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을 휴직한다.
- ④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이내에, 임기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⑤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각호의 1’은 이어서 열거된 사항 중 선택적으로 한 개 이상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각호중 하나’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는 수동형으로 부드러운 표현이 아니므로 ‘교원의 직을 휴직한다’로 바꾸는 것이 더 부드럽다.

제31조 (교통기관이용) 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

[순화안] 제31조 (교통기관이용) 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탈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공무의 경우에만 무료로 탈 수 있다.

‘승용하다’는 ‘타다’라는 말이므로 ‘승용할 수 있다’는 ‘탈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다.

‘~에 한한다’라는 표현은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정확하게 ‘경우에만 무료로 탈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2조 (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수당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순화안] 제32조 (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수당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줄인다.

③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에서 정한다.

IV. 국회법 순화안

‘감액한다’는 금액을 줄인다는 의미로 이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의 단어이므로 ‘줄인다’로 하여야 한다.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국회규칙으로’ 부분의 ‘~으로’ 도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회규칙에서’로 바꾸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된다.

제33조 (교섭단체) ①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33조 (교섭단체) ①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출서명하고 도장찍은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그) 의원이 관계서류를 덧붙여서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소속의원에 이동이’는 소속의원이 이동한 것을 의미하므로 ‘소속의원의 이동이’로 바꾸어야 한다.

‘첨부(添附)’는 어떤 대상에 대상을 더하여 붙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순우리말로 순화하는 경우 ‘덧붙여서’로 할 수 있다.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로도 바꿀 수 있다.

‘아니하는’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를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어서 ‘않는’으로 하는 것이 좋다.

‘연서·날인’이란 줄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줄서명하고 도장찍은’으로 바꿀 수 있다.

제34조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①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②정책연구위원은 당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③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자격·임면절차·직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순화안] 제34조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①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②정책연구위원은 그(해당)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③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자격·임면절차·직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에서 정한다.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IV. 국회법 순화안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로도 바꿀 수 있다.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국회규칙으로’ 부분의 ‘~으로’ 도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회규칙에서’로 바꾸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된다.

제35조 (위원회의 종류)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순화안] 제35조 (위원회의 종류)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가지가 있다.

‘~으로 한다’는 표현은 앞의 주어와 어울리지 않는다. 관용적으로 법령에서는 사용되나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따라서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가지가 있다’가 부드러운 표현이다.

제3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 다. 국회사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국회도서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국회예산정책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대통령비서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대통령경호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 가. 법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법제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감사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헌법재판소사무에 관한 사항
-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바. 국가인권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국가청렴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 아.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자.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3. 정무위원회
 - 가. 국무총리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국가보훈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공정거래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금융감독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 4. 재정경제위원회
 - 가. 재정경제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 다. 한국은행소관에 속하는 사항
-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가. 통일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외교통상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 6. 국방위원회
 - 가. 국방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 7. 행정자치위원회
 - 가. 행정자치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중앙인사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
 -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 8. 교육위원회
 - 교육인적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가. 과학기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정보통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10. 문화관광위원회
 - 가. 문화관광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국정홍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방송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가. 농림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해양수산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12. 산업자원위원회
 - 가. 산업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 13.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IV. 국회법 순화안

- 14. 환경노동위원회
 - 가. 환경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노동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15. 건설교통위원회
 - 건설교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16. 정보위원회
 - 가. 국가정보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 17. 여성가족위원회
 - 여성가족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②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순화안] 제3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 1. 국회운영위원회
 -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 다. 국회사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국회도서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국회예산정책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대통령비서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대통령경호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법제사법위원회
 - 가. 법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법제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감사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헌법재판소사무에 관한 사항
 -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바. 국가인권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국가청렴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 아.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자.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3. 정무위원회
 - 가. 국무총리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국가보훈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공정거래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금융감독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 4. 재정경제위원회
 - 가. 재정경제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 다. 한국은행소관에 속하는 사항
-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가. 통일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외교통상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 6. 국방위원회
 - 가. 국방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 7. 행정자치위원회
 - 가. 행정자치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중앙인사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
 -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 8. 교육위원회
 - 교육적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가. 과학기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정보통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10. 문화관광위원회
 - 가. 문화관광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국정홍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방송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가. 농림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해양수산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12. 산업자원위원회
 - 가. 산업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 13.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14. 환경노동위원회
 - 가. 환경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노동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15. 건설교통위원회
 - 건설교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 16. 정보위원회
 - 가. 국가정보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 17. 여성가족위원회
 - 여성가족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IV. 국회법 순화안

②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아니하는’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를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어서 ‘않는’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제38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한다.

[순화안] 제38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에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2인이다.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국회규칙으로’ 부분의 ‘~으로’ 도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회규칙에서’로 바꾸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된다.

‘12인으로 한다’는 앞의 위원의 숫자를 의미하는 정수가 있으므로 ‘12이다’로 하든가 아니면 ‘12인이다’로 하여야 한다.

제40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의 임기동안 재임한다.

③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순화안] 제40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임기동안 재임한다.

③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표현은 ‘임기는 2년이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제40조의2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순화안] 제40조의2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직무와 관련한’에서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관련된’으로 하여야 한다.

제41조 (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거한다.

③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④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⑤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순화안] 제41조 (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해당(그) 상임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출된다.

③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부터 3일 안에 실시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된다.

④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⑤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IV. 국회법 순화안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로도 바꿀 수 있다.

‘내지’는 ‘~부터 ~까지’를 의미하므로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바꾸어야 한다.

‘선거한다’의 주어는 상임위원장이므로 ‘선출된다’로 하여야 한다.

‘실시하며’의 주어는 선거이므로 ‘실시된다’로 하여야 한다.

‘실시한다’의 주어는 선거이므로 ‘실시된다’로 하여야 한다.

‘~이내에’라는 표현도 ‘~안에’로 바꿀 수 있으므로 바꾼다.

제42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①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④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

⑤전문위원은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⑥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순화안] 제42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①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 ②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 ④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
- ⑤전문위원은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⑥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마에 의한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특히 법령용어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것을 따른다’라는 표현이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된다.

‘수행함에 있어’도 명사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데, ‘수행하는데’가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된다.

- 제43조 (전문가의 활용)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④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순화안]** 제43조 (전문가의 활용)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IV. 국회법 순화안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로도 바꿀 수 있다.

‘아니하는’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를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어서 ‘않는’으로 하는 것이 좋다.

‘~者는’은 ‘~사람은’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제44조 (특별위원회) ①국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순화안] 제44조 (특별위원회) ①국회는 여러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때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본다.

‘수개의’는 ‘여러개의’로 바꿀 수 있다.

‘인정한’은 안건을 꾸며주는 단어이므로 ‘인정되는’이 맞는 표현이다.

‘종료시까지’는 ‘종료때까지’이다.

‘존속(存續)’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를 유지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의한다. 따라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존속하는’은 ‘남아있는’으로 바꿀 수 있다.

제4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위원의 임기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제41조제3항 내지 제5항,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IV. 국회법 순화안

[순화안] 제4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이다. 이 경우 그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시작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다.
④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된다.
⑤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⑥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 준용된다.

‘개시(開始)’는 어떤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시’를 ‘시작’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50인으로 한다’는 표현은 앞에 위원수가 있으므로 ‘50인이다’ 혹은 ‘50이다’로 바꾸어야 한다.

‘~의하여’도 ‘~에 따라서’로 바꾼다.

‘1년으로 한다’는 표현도 ‘1년이다’로 바꾸어야 한다.

‘선거하다’도 주어가 선출되는 사람이므로 ‘선출되다’로 바꾼다.

‘아니한다’는 표현도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않는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내지’는 ‘~부터 ~까지’를 의미하므로 ‘제4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준용한다’는 서술어는 타동사이거나 ‘이를’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이를’을 생략하고 ‘준용된다’로 바꾼다.

제46조 (윤리특별위원회) ①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에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순화안] 제46조 (윤리특별위원회) ①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③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에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에서 정한다.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국회규칙으로’ 부분의 ‘~으로’ 도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회규칙에서’로 바꾸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된다.

‘아니한다’는 표현도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않는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제47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순화안] 제47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서로 뽑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IV. 국회법 순화안

‘호선’이란 서로 뽑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호선하고’는 ‘서로 뽑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그리고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위원회 선임의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교섭단체소속의원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위원의 선임이 있을 후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순화안] 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안에 그리고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위원회 선임의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안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소속의원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안에 하여야 한다.
- ⑤ 위원의 선임이 있는 후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안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⑦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안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혼란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IV. 국회법 순화안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로도 바꿀 수 있다.

‘아니하는’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를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어서 ‘않는’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내에’ ‘내에’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안에’로 바꿀 수 있다.

‘아니된다’란 표현도 일반인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안된다’로 고친다.

제50조 (간사) ①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순화안] 제50조 (간사) ①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서로 뽑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호선’이란 서로 뽑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로 뽑고’로 바꾼다.

‘소속하지 아니하는’이란 표현은 부드러운 표현이 아니다. ‘속하지 않은’이 더 올바른 표현이다.

‘아니하여’는 ‘않아’로 바꾼다.

제52조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순화안] 제52조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된다.

‘개회한다’의 주어는 위원회이므로 주어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개회된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IV. 국회법 순화안

제53조 (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폐회중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정보위원회는 최소한 월 1회로 한다.

②상임위원회는 정례회의의 개회일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1회는 미리 그 개회 주·요일을 지정하여 자동 개회한다.

③정례회의는 당해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및 청원 기타 안건과 주요현안등을 심사한다.

④상임위원회가 정례회의 당일의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

[순화안] 제53조 (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폐회중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된다. 다만, 정보위원회는 최소한 월 1회로 한다.

②상임위원회는 정례회의의 개회일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1회는 미리 그 개회 주·요일을 지정하여 자동 개회된다.

③정례회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및 청원 기타 안건과 주요현안등을 심사한다.

④상임위원회가 정례회의 당일의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로도 바꿀 수 있다.

‘개회하다’의 주어가 위원회이므로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회되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제54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순화안] 제54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회하다’의 주어가 위원회이므로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회되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제54조의2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무원(의원보조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 정한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순화안] 제54조의2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무원(의원보조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③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 정한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에서 정한다.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국회규칙으로’ 부분의 ‘~으로’ 도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회규칙에서’로 바꾸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된다.

‘아니한다’는 표현도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않는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IV. 국회법 순화안

‘아니된다’란 표현도 일반인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안된다’로 고친다.
‘타인’은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제55조 (위원회에서의 방청등) ①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순화안] 제55조 (위원회에서의 방청등) ①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자(者)’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사람’으로 바꾼다.

제56조 (본회의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순화안] 제56조 (본회의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개회할 수 없다’의 주어는 위원회이므로 위원회가 개회되는 것이므로 수동태로 바뀌어야 한다.

- 제57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상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④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 ⑤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IV. 국회법 순화안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⑦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안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외에 그 심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수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순화안] 제57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상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⑤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⑥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이름으로 한다.

⑦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안된다.

⑧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외에 그 심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지정’은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러 사람 가운데 이름을 지칭한다는 ‘지명’이란 단어가 더 정확하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표현은 위원이 중복되고 복잡하므로 간결하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로 바꾼다.

‘아니하는’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를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어서 ‘않는’으로 하는 것이 좋다.

‘아니된다’란 표현도 일반인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안된다’로 고친다.

‘공개하다’는 타동사인데, 주어가 공개되는 회의이므로 수동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명의’는 어떤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주체로서 표명되는 성명 또는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

‘수개의’는 ‘여러 개의’로 바꿀 수 있다.

제58조 (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토론이 끝난 후가 아니면 회부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이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48시간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⑨제5항 단서 및 제6항의 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IV. 국회법 순화안

[순화안] 제58조 (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토론이 끝난 후가 아니면 회부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이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⑥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48시간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⑨제5항 단서 및 제6항의 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는 어색한 표현으로 ‘취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로 바꾼다.

‘그렇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部分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아니한다’는 표현도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않는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로도 바꿀 수 있다.

‘이를 적용하지’의 주어는 규정이므로 타동사인 적용하다를 수동태로 바꾸고 불필요한 ‘이를’을 생략한다.

IV. 국회법 순화안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배부하다’는 서류, 물품, 금전 기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누어 준다고 고칠 수 있다.

제59조 (법률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순화안] 제59조 (법률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

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62조 (비공개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순화안] 제62조 (비공개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에 대한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일본어는 ‘의’가 여러번 반복되어도 좋으나 우리말은 ‘의’를 반복하면 어색하게 된다. 따라서 ‘비밀자료의 열람의 요구가’는 ‘비밀참고자료에 대한 열람요구가’로 바꾼다.

제63조 (연석회의) ①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④세입예산안과 관련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IV. 국회법 순화안

[순화안] 제63조 (연석회의) ①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토론에 부칠 안전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전에 대한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④세입예산안과 관련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부의하다’는 ‘토론에 부치다’는 의미이므로 ‘토론에 부칠’로 바꾼다.
‘안전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는 ‘의’가 두 번 반복되어 어색한 표현이 되므로 ‘안전에 대한 소관위원회의 회의로’로 바꾼다.

제63조의2 (전원위원회) ①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등 주요의안의 본회의상정전이나 본회의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③전원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④전원위원회는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삭 제
⑥기타 전원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순화안] 제63조의2 (전원위원회) ①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등 주요의안의 본회의상정전이나 본회의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전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 ③전원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 ④전원위원회는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삭 제
- ⑥기타 전원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에서 정한다.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로도 바꿀 수 있다.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국회규칙으로’ 부분의 ‘~으로’ 도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회규칙에서’로 바꾸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된다.

‘아니할 수 있다’는 ‘않을 수 있다’로 바꾼다.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 제64조 (공청회)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IV. 국회법 순화안

③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인 및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기타 공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순화안] 제64조 (공청회)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인 및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기타 공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에서 정한다.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국회규칙으로’ 부분의 ‘~으로’ 도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회규칙에서’로 바꾸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된다.

‘안된다’란 표현도 일반인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안된다’로 고친다. ‘자(者)’는 ‘사람’으로 바꾼다.

제65조 (청문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위원회는 청문회개회 5일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⑥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 ⑦제6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청문회에 준용한다.
- ⑧기타 청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순화안] 제65조 (청문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위원회는 청문회개회 5일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청문회는 공개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⑦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청문회에 준용된다.

⑧기타 청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에서 정한다.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개회할 수 있다’의 주어는 청문회이므로 수동태로 ‘개회될 수 있다’로 바꾼다.

‘공개하다’의 주어는 청문회로 하는 것이 의미가 명확해지므로 ‘공개되다’인 수동형으로 바꾼다.

‘~내지~’는 ‘~부터 ~까지’로 바꾼다.

‘준용한다’도 주어가 규정이므로 수동형인 ‘준용되다’로 바꾸어야 한다.

IV. 국회법 순화안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국회규칙으로’ 부분의 ‘~으로’ 도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회규칙에서’로 바꾸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된다.

제67조 (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순화안] 제67조 (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더할 수(보탬수) 없다.

‘가하다’는 ‘더하다’, ‘보태다’로 바꿀 수 있다.

제68조 (소위원회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68조 (소위원회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덧붙여야 한다.

‘첨부(添附)’는 어떤 대상에 대상을 더하여 붙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순우리말로 순화하는 경우 ‘덧붙여야’로 할 수 있다.

제69조 (위원회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 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화안] 제69조 (위원회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이름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이름
 5.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이름
 6. 심사안건명
 7. 의 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 토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이름쓰고 도장찍는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IV. 국회법 순화안

‘서명 날인하다’는 ‘이름쓰고 도장찍는다’는 의미이므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성명’은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

‘부의하다’는 ‘토의에 부치다’는 의미이므로 바꿀 수 있다.

- 제70조 (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 ①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 ②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아닌 의원도 또한 같다.
-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할 수 있다.
- ⑤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이를 정한다.
- ⑥기타 위원회의 문서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순화안]** 제70조 (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 ①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등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 ②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아닌 의원도 또한 같다.
-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나누어 주고 일반에게 반포할 수 있다.
- ⑤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이를 정한다.
- ⑥기타 위원회의 문서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

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 ‘해당’으로도 바꿀 수 있다.

‘배부하다’는 서류, 물품, 금전 기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누어 준다로 고칠 수 있다.

제71조 (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외에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동의자의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에 있어서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순화안] 제71조 (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외에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의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에 있어서는 손드는 것으로 표결할 수 있다.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거수’는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손드는 것으로’로 바꿀 수 있다.

제72조 (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

[순화안] 제72조 (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의한다’는 자동사이므로 본회의를 주어로 하여 수동형으로 ‘개의된다’로 바꾼다.

IV. 국회법 순화안

제73조 (의사정족수) ①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의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순화안] 제73조 (의사정족수) ①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된다.

②의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개의한다’는 자동사이므로 본회의를 주어로 하여 수동형으로 ‘개의된다’로 바꾼다.

‘달하지’는 한문투의 표현으로 ‘이르지’로 바꾼다.

제75조 (회의의 공개) ①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순화안] 제75조 (회의의 공개) ①본회의는 공개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출서명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안하고 표결한다.

‘공개한다’는 주어가 불분명하고 앞의 본회의를 주어로 하는 것이 명확한 의사전달이 가능하므로 수동형으로 ‘공개된다’로 바꾼다.

‘연서’란 2인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서면에 각각의 이름을 병렬하여 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줄서명’ 또는 ‘이름이어 씌움’으로 바꿀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는 ‘안할 수 있다’로 바꾼다.

‘아니하고’는 ‘안하고’로 바꾼다.

제7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본회의에 부의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⑤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순화안] 제7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본회의 토의에 부치는 것이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을 바로 의원에게 알리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⑤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개의할 수 있다.

‘부의’는 토론에 부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의요청된’은 ‘토의에 부치는 것이 요청된’으로 바꾼다.

IV. 국회법 순화안

‘통지’란 일정한 사실,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지’도 우리말로 ‘알림’이란 표현이 있으므로 알림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통지하다’도 ‘알리다’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아니할 때에는’은 ‘않을 때에는’으로 바꾼다.

제77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순화안] 제77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 이상의 줄서명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덧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안하고 표결한다.

‘연서’란 2인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서면에 각각의 이름을 병렬하여 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줄서명’ 또는 ‘이름이어 씀’으로 바꿀 수 있다.

‘첨부(添附)’는 어떤 대상에 대상을 더하여 붙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순우리말로 순화하는 경우 ‘덧붙여야’로 할 수 있다.

‘아니하고’는 ‘안하고’로 바꾼다.

제79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순화안] 제79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줄서명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이름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

④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연서’란 2인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서면에 각각의 이름을 병렬하여 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줄서명’ 또는 ‘이름이어 씀’으로 바꿀 수 있다.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로도 바꿀 수 있다.

IV. 국회법 순화안

‘성명’은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

‘명시하다’는 ‘분명히 드러내 보이다’는 의미이므로 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제79조의2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순화안] 제79조의2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따르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에서 정한다.

‘첨부(添附)’는 어떤 대상에 대상을 더하여 붙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순우리말로 순화하는 경우 ‘덧붙여야’로 할 수 있다.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국회규칙으로’ 부분의 ‘~으로’ 도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회규칙에서’로 바꾸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된다.

‘수반하다’는 따르다는 의미이므로 쉬운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제80조 (국회공보의 발간<개정 2005.7.28>) ①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에정인 의안목록, 국회의 주요행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회공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제1항의 국회공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기중 매일 발간한다.
 ③삭 제
 ④국회공보의 발간 및 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순화안] 제80조 (국회공보의 발간<개정 2005.7.28>) ①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에정인 의안목록, 국회의 주요행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회공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나누어 준다.
 ②제1항의 국회공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기중 매일 발간된다.
 ③삭 제
 ④국회공보의 발간 및 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배부하다’는 서류, 물품, 금전 기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누어 준다’로 고칠 수 있다.

‘발간한다’는 타동사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 이 문장에서 공보가 주어이므로 ‘발간한다’는 수동형이 되어야 한다.

제81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V. 국회법 순화안

[순화안] 제81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나누어 주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 토의에 부친다. 폐회 또는 휴회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의원에게 나누어 줄 때에는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배부하다’는 서류, 물품, 금전 기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누어 준다’로 고칠 수 있다.

‘아니할 때에는’은 ‘않을 때에는’으로 고친다.

‘부의하다’는 ‘토의에 부치다’로 고칠 수 있다.

‘인정하는 경우에는’의 경우 위원이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동형’이 되어야 한다.

제82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순화안] 제82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대하여는’보다는 ‘대해서는’을 더 많이 사용한다.

‘~에 관련이 있는’이란 표현보다는 ‘~과 관련이 있는’이란 표현이 부드럽다.

제82조의2 (입법예고) ①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주요내용등을 국회공보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입법예고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순화안] 제82조의2 (입법예고) ①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주요내용등을 국회공보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입법예고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에서 정한다.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국회규칙으로’ 부분의 ‘~으로’ 도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회규칙에서’로 바꾸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된다.

제83조 (관련위원회회부) ①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2항의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순화안] 제83조 (관련위원회회부) ①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

IV. 국회법 순화안

회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2항의 기간 안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명시하다’는 ‘분명히 드러내 보인다’는 의미이므로 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기간 내에’는 ‘기간 안에’로 바꿀 수 있다.

제83조의2 (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①기획예산처소관에 속하는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협의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소관위원회는 기획예산처소관에 속하는 법률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④소관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순화안] 제83조의2 (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①기획예산처소관에 속하는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따르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협의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소관위원회는 기획예산처소관에 속하는 법률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 ④소관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따르는 법률안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에서 정한다.

‘수반하다’는 ‘따르다’는 의미이므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아니하는’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를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어서 ‘않는’으로 하는 것이 좋다.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국회규칙으로’ 부분의 ‘~으로’ 도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회규칙에서’로 바꾸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된다.

- 제84조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 ②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함에 있어서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할당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 ④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소관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

IV. 국회법 순화안

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순화안] 제84조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의 토의에 부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의 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바로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함에 있어서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할당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깎인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본다.

⑥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⑦삭 제

⑧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다.

‘회부하고’의 주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결산이므로 회부하고는 수동형이 되어야 한다.

‘대하여는’은 ‘대해서는’으로 바꾸는 것이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된다.

‘부의하다’는 토의에 ‘부치다’는 의미이므로 바꾼다.

‘첨부(添附)’는 어떤 대상에 대상을 더하여 붙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순우리말로 순화하는 경우 ‘덧붙여서’로 할 수 있다.

‘삭감하다’는 ‘깎는다’, ‘줄인다’는 의미이므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통지’란 일정한 사실,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지’도 우리말로 ‘알림’이란 표현이 있으므로 알림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통지하다’도 ‘알리다’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행위를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IV. 국회법 순화안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기간 내에’는 ‘기간 안에’로 바꿀 수 있다.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는에서 주어는 위원회이므로 세입예산안은은 목적어가 된다. 따라서 ‘세입예산안을’로 고쳐야 한다.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제85조 (심사기간) ①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순화안] 제85조 (심사기간) ①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 토의에 부칠 수 있다.

‘기간 내에’는 ‘기간 안에’로 고친다.

‘아니한 때에는’은 ‘않은 때에는’으로 고친다.

‘부의하다’는 토의에 ‘부치다’라는 의미이므로 ‘토의에 부칠 수 있다’로 고친다.

제86조 (체계·자구의 심사) ①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심사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순화안] 제86조 (체계·자구의 심사) ①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심사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 토의에 부칠 수 있다.

‘기간 내에’는 ‘기간 안에’로 고친다.

‘부의하다’는 토의에 ‘부치다’라는 의미이므로 ‘토의에 부칠 수 있다’로 고친다.

제87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순화안] 제87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 토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 토의에 부치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 토의에 부쳐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아니한다’는 표현도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않는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부의하다’는 토의에 ‘부치다’라는 의미이므로 쉬운 말로 바꾼다.

제88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IV. 국회법 순화안

[순화안] 제88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아니한다’는 표현도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않는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제91조 (변안) ①본회의에 있어서의 변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②위원회에 있어서의 변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순화안] 제91조 (변안) ①본회의에 있어서의 변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정부에 옮겨 보내진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②위원회에 있어서의 변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이송’이란 동종기관 상호간에 사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이 분배되어 있는 경우, 한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그 사건의 처리를 넘기는 처분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장소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송’은 ‘옮겨 보냄’으로 바꿀 수 있다.

제93조 (안전심의) 본회의는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전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

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순화안] 제93조 (안건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거치지 아니한’은 ‘거치지 않은’으로 고친다.

‘안건에 대하여는’은 ‘안건에 대해서는’으로 바꾼다.

제93조의2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①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기회 기간중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순화안] 제93조의2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①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정기회 기간중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IV. 국회법 순화안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상정하는’을 받는 단어가 뒤의 법률안이므로 ‘상정되는’이 정호가한 표현이다.

제95조 (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의원 50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순화안] 제95조 (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이상의 찬성자와 줄서명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되어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연서’는 ‘줄서명’으로 바꿀 수 있다.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문맥상으로 ‘심사보고된 수정안’으로 바뀌어야 한다.

‘제출하여야’의 주어는 앞의 ‘대안’이므로 수동형인 ‘제출되어야’로 바뀌어야 한다.

제96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순화안] 제96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수개’는 우리말의 ‘여러 개’로 바꾼다.

IV. 국회법 순화안

제98조 (의안의 이송) ①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98조 (의안의 옮겨 보냄) ①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옮겨 보낸다.

②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국회에 알려야 한다.

③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알려야 한다.

‘이송’이란 동종기관 상호간에 사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이 분배되어 있는 경우, 한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그 사건의 처리를 넘기는 처분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장소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송’은 ‘옮겨 보냄’으로 바꿀 수 있다.

‘통지’란 일정한 사실,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지’도 우리말로 ‘알림’이란 표현이 있으므로 알림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통지하다’도 ‘알리다’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하지 아니한 때에는’은 간단하게 ‘하지 않은 때에는’으로 바꾼다.

제98조의2 (대통령령등의 제출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순화안] 제98조의2 (대통령령등의 제출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안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해당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바로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IV. 국회법 순화안

‘통지’란 일정한 사실,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지’도 우리말로 ‘알림’이란 표현이 있으므로 알림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통지하다’도 ‘알리다’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로도 바꿀 수 있다.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행위를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기간을 나타내는 ‘~이내에’는 ‘~안에’로 바꿀 수 있다.

제99조 (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순화안] 제99조 (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알려야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알림을 하지 않은 의원은 알림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통지’란 일정한 사실,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지’도 우리말로 ‘알림’이란 표현이 있으므로 알림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통지하다’도 ‘알리다’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하지 아니한’은 우리말로 ‘하지 않는’으로 바꾼다.

제102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순화안] 제102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안된다.

‘아니된다’란 표현도 일반인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안된다’로 고친다. ‘반하여서는’은 ‘반해서는’으로 바꾼다.

제103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순화안] 제103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IV. 국회법 순화안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104조 (발언원칙) ①정부에 대한 질문외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하되,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③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한 총발언시

간을 정하여 이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할당된 시간내에서 발언자수 및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수를 정할 수 있다.

⑤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순화안] 제104조 (발언원칙) ①정부에 대한 질문외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하되,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③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한 총발언시간을 정하여 이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할당된 시간내에서 발언자수 및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수를 정할 수 있다.

⑤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아니하는’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를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어서 ‘않는’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대하여는’은 ‘대해서는’으로 바꾸는 것이 더 부드러운 표현이다.

IV. 국회법 순화안

제105조 (5분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중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개의 4시간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순화안] 제105조 (5분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중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개의 4시간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아니하는’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를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어서 ‘않는’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제106조 (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순화안] 제106조 (토론의 알림)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알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통지’란 일정한 사실,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지’도 우리말로 ‘알림’이란 표현이 있으므로 알림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통지하다’도 ‘알리다’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제108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각 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그러나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순화안] 제108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각 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그러나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아니하고’는 ‘않고’로 바꾸어 부드러운 문장으로 만든다.

제111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순화안] 제111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는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있지 아니한’은 ‘있지 않는’으로 바꾸어야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된다.

제112조 (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순화안] 제112조 (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기간 내에’는 ‘기간 안에’로 고친다.

IV. 국회법 순화안

제114조 (기명·무기명투표절차) ①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순화안] 제114조 (기명·무기명투표절차) ①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아니하는’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를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어서 ‘않는’으로 하는 것이 좋다.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로도 바꿀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部分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114조의2 (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순화안] 제114조의2 (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아니하고’란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를 부드러운

IV. 국회법 순화안

표현으로 바꾸어서 ‘얹고’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제115조 (회의록) ①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표결수
 14. 기명·전자·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17. 정부의 청원처리결과보고서
 18.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처리보고서
 19.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③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순화안] 제115조 (회의록) ①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및 이름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얹겨 보냄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이름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 13. 표결수
- 14. 기명·전자·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이름
-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 17. 정부의 청원처리결과보고서
- 18.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처리보고서
- 19.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 ③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이름쓰고 도장찍어서 국회에 보존한다.

‘이송’이란 동종기관 상호간에 사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이 분배되어 있는 경우, 한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그 사건의 처리를 넘기는 처분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장소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송’은 ‘옮겨 보냄’으로 바꿀 수 있다.

‘서명 날인하다’는 ‘이름쓰고 도장찍는다’는 의미이므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로 바꿀 수 있다.

‘성명’은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

- 제11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 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 ③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 ④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순화안]** 제11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 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 ③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

IV. 국회법 순화안

의록에 기재한다.

④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아니하고’는 ‘않고’로 바꾼다.

제118조 (회의록의 배부·반포)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인자 또는 그 소속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반포할 수 있다.

⑥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순화안] 제118조 (회의록의 배부·반포)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되고 일반에게 반포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발인자 또는 그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되지 않은 회의록부분에 관해 열람·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제·복사하게 해서는 안된다.

④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반포할 수 있다.

⑥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에서 정한다.

‘배부하고’에서 주어는 회의록이므로 수동형이 되어 ‘배부되고’이어

야 한다.

‘반포한다’의 주어가 회의록이므로 수동형이 되어 ‘반포된다’가 되어야 한다.

‘관하여는’보다는 ‘관해서는’이 더 부드러운 표현이다.

‘아니할 수 있다’는 ‘안할 수 있다’로 바꾼다.

‘계재되지 아니한’보다는 ‘계재되지 않은’이 더 부드러운 표현이다.

‘관하여’보다는 ‘관해서’가 더 많이 관용적으로 사용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너무 딱딱한 느낌을 주므로 ‘해서는 안된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소멸’이란 없어져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순우리말로 바꾸어 ‘없어짐’으로 할 수 있다.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국회규칙으로’ 부분의 ‘~으로’ 도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회규칙에서’로 바꾸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된다.

‘아니된다’란 표현도 일반인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안된다’로 고친다.

‘배부하다’는 서류, 물품, 금전 기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누어 준다’로 고칠 수 있다.

제119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순화안] 제119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알림)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알림한다.

‘통지’란 일정한 사실,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지’도 우리말로 ‘알림’이란 표현이 있으므로 알림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통지하다’도 ‘알리다’로 변경

IV. 국회법 순화안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제121조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121조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명시하다’는 ‘분명히 드러내 보이다’는 의미이므로 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제122조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③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기타 답변관계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순화안] 제122조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바로 이를 정부에 이송 옮겨 보낸다.

③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안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알려야 한다.

④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기타 답변관계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통지’란 일정한 사실,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지’도 우리말로 ‘알림’이란 표현이 있으므로 알림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통지하다’도 ‘알리다’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IV. 국회법 순화안

‘이송’이란 동종기관 상호간에 사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이 분배되어 있는 경우, 한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그 사건의 처리를 넘기는 처분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장소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송’은 ‘옮겨 보냄’으로 바꿀 수 있다.

‘~이내에’는 ‘~안에’로, ‘기간내에’는 ‘기간안에’로 바꿀 수 있다.

제122조의2 (정부에 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④의제별 질문의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의장은 제4항에서 규정한 의제별 질문의원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⑧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일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개의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122조의2 (정부에 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③제2항의 규정도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 ④의제별 질문의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⑤의장은 제4항에서 규정한 의제별 질문의원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질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⑥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⑦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 ⑧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일전일까지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알림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개의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정부에 알려야 한다.

‘통지’란 일정한 사실,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지’도 우리말로 ‘알림’이란 표현이 있으므로 알림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통지하다’도 ‘알리다’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아니하는’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를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어서 ‘않는’으로 하는 것이 좋다.

‘아니한다’는 표현도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않는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제123조 (청원서의 제출) ①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V. 국회법 순화안

-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 [순화안]** 제123조 (청원서의 제출) ①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이름(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쓰고 도장찍어야 한다.
③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성명’은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

‘서명 날인하다’는 ‘이름쓰고 도장찍는다’는 의미이므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아니한다’는 표현도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않는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 제124조 (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요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 [순화안]** 제124조 (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나누어 주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이름·청원의 요지·소개의원의 이름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성명’은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

‘배부하다’는 서류, 물품, 금전 기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누어 준다’로 고칠 수 있다.

- 제125조 (청원심사·보고등) ①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 ②위원장은 폐회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⑥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 ⑦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순화안]** 제125조 (청원심사·보고등) ①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 ②위원장은 폐회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⑤위원회에서 본회의 토의에 부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덧붙여서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⑥위원회에서 본회의 토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안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 토의에 부친다.
- ⑦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에서 정한다.

‘통지’란 일정한 사실,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지’도 우리말로 ‘알림’이란 표현이 있으므로 알림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통지하다’도 ‘알리다’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IV. 국회법 순화안

‘첨부(添附)’는 어떤 대상에 대상을 더하여 붙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순우리말로 순화하는 경우 ‘덧붙여서’로 할 수 있다.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국회규칙으로’ 부분의 ‘~으로’
도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회규칙에서’로 바꾸는 것이 정확
한 표현이 된다.

‘부의하다’는 ‘토의에 부치다’로 바꿀 수 있다.

제126조 (정부이송과 처리보고) ①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
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126조 (정부이송과 처리보고) ①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덧붙여서
정부에 옮겨보낸다.

②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바로 국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송’이란 동종기관 상호간에 사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이 분배되어
있는 경우, 한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그 사건의 처리를 넘기는 처분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장소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따
라서 ‘이송’은 ‘옮겨 보냄’으로 바꿀 수 있다.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
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
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
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
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첨부(添附)’는 어떤 대상에 대상을 더하여 붙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순우리말로 순화하는 경우 ‘덧붙여서’로 할 수 있다.

제127조의2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①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순화안] 제127조의2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①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안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안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안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는 ‘안에’로 바꿀 수 있다.

제128조 (보고·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제1항의 보고·서류제출요구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IV. 국회법 순화안

[순화안] 제128조 (보고·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제1항의 보고·서류제출요구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이내에’는 ‘안에’로 바꿀 수 있다.

제128조의2 (결산의 제출요구 등) ①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기금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한다.

②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128조의2 (결산의 제출요구 등) ①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기금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한다.

②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끝내야 한다.

‘완료’는 ‘근념, 마침’을 의미하므로 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이름·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성명’은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

‘기간 내에’는 ‘기간 안에’로 바꿀 수 있다.

제131조 (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

[순화안] 제131조 (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바로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IV. 국회법 순화안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제132조 (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132조 (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마치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완료’는 ‘끈땀, 마침’을 의미하므로 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제133조 (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133조 (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이름·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성명’은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

제134조 (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탄핵소추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순화안] 제134조 (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탄핵소추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바로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행동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제135조 (사직) ①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순화안] 제135조 (사직) ①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이름쓰고 도장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서명·날인’은 ‘이름쓰고 도장찍는것’을 말하므로 ‘이름쓰고 도장찍은’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 아니하고’는 ‘하지 않고’로 바꿀 수 있다.

제136조 (퇴직) 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IV. 국회법 순화안

[순화안] 제136조 (퇴직) 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 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시작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바로 국회에 알려야 한다.

‘개시’는 시작을 의미하므로 ‘시작’으로 바꿀 수 있다.

‘통지’란 일정한 사실,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지’도 우리말로 ‘알림’이란 표현이 있으므로 알림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통지하다’도 ‘알리다’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행위를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제137조 (궐원통지) 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137조 (궐원알림) 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통지’란 일정한 사실,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지’도 우리말로 ‘알림’이란 표현이 있으므로 알림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통지하다’도 ‘알리다’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제138조 (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순화안] 제138조 (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의 출서명으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연서’는 ‘출서명’으로 바꿀 수 있다.

제139조 (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①의장은 제138조의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피심위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순화안] 제139조 (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①의장은 제138조의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피심위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함을’이란 표현을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일반 국민들에게 법조문이 이질적이라는 느낌을 줌으로써 딱딱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은 ‘못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제140조 (답변서의 위원회심사)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IV. 국회법 순화안

[순화안] 제140조 (답변서의 위원회심사)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기일 내에’는 ‘기일 안에’로 바꿀 수 있다.

제142조 (의결) ①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피심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본회의는 피심 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 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순화안] 제142조 (의결) ①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 토의에 부쳐야 한다.
②피심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본회의는 피심 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 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부의하다’는 토의에 부치다는 의미이므로 쉬운 용어로 고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함에는’이란 표현을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일반 국민들에게 법조문이 이질적이라는 느낌을 줌으로써 딱딱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의결할 때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제143조 (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순화안] 제143조 (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행한다’는 ‘행사한다’로 고치는 것이 더 명확한 표현이 된다.

제145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순화안] 제145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함’이란 표현을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일반 국민들에게 법조문이 이질적이라는 느낌을 줌으로써 딱딱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를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48조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화안] 제148조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들여와서는 아니 된다.

‘반입’이란 운반하여 들여오는 것을 의미하므로 ‘들여와서는’으로 바꿀 수 있다.

IV. 국회법 순화안

제149조 (국회에 의한 방송) ①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를 위하여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순화안] 제149조 (국회에 의한 방송) ①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③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를 위하여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에서 정한다.

‘아니된다’는 ‘안된다’로 고친다.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국회규칙으로’ 부분의 ‘~으로’ 도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회규칙에서’로 바꾸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된다.

제149조의2 (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자는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화안] 제149조의2 (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하기로’는 너무 딱딱한 표현이므로 ‘않기로’로 바꾼다.

‘~자(者)’는 ‘~사람은’으로 바꾼다.

‘하여서는’은 딱딱한 표현이므로 ‘해서는’으로 바꾼다.

제150조 (현행범인의 체포)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순화안] 제150조 (현행범인의 체포)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될 수 없다.

‘이를 체포할 수 없다’에서 주어가 불분명한데, 의원을 주어로 하는 경우에 수동형으로 고쳐야 하고 불필요한 ‘이를’을 생략한다.

제151조 (회의장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순화안] 제151조 (회의장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자(者)’는 사람으로 고친다.

IV. 국회법 순화안

제153조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흥기를 휴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순화안] 제153조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흥기를 휴대한 사람, 주기가 있는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자(者)’는 사람으로 고친다.

‘아니한다’는 표현도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않는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제155조 (윤리심사 및 징계)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국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청렴의 의무) 및 제3항(이권운동의 금지), 이 법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제2항에 위반하여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한 때
3. 제102조(의제의 발언의 금지) 및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계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공개회의 내용을 공표한 때
6.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상의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7.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8.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2회 받았을 때
 10.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1.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 [순화안]** 제155조 (윤리심사 및 징계)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청렴의 의무) 및 제3항(이권운동의 금지), 이 법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제2항을 위반하여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한 때
 3. 제102조(의제의 발언의 금지) 및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계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공개회의 내용을 공표한 때
 6.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7.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8.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집회일로부터 7일 안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안에 출석하지 않은 때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2회 받았을 때
 10.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1.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위반하다를 수동형으로 하여 문장을 구성 하였으나,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맞다.

‘~에 위반하여’도 ‘~을 위반하여’로 하여야 한다. 위반하다가 타동사이므로 앞에 목적어가 와야하기 때문이다.

‘각호의 1’은 이어서 열거된 사항 중 선택적으로 한 개 이상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각호중 하나’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IV. 국회법 순화안

‘이내에’는 ‘안에’로 바꾼다.

‘아니하거나’는 ‘않거나’로 바꾼다.

‘아니한 때’는 ‘않은 때’로 바꾼다.

제156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제15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⑤제3항과 제4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순화안] 제156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제15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⑤제3항과 제4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내지~’는 ‘~부터 ~까지’로 바꿀 수 있다.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제157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등) ①제15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제15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회부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월의 범위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순화안] 제157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등) ① 제15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안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IV. 국회법 순화안

②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 안에 하여야 한다.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제15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사회부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는 날부터 3월 안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안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월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는 ‘안에’로 바꿀 수 있다.

제158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의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순화안] 제158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의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공개하지’는 주어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므로 회의를 주어로 하는 경우 수동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개되지’로 바꾸어야 하며, ‘아니한다’는 ‘않는다’로 바꾼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아니한다’는 표현도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않는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제161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특례)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수 있다.

[순화안] 제161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특례)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하지 않고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하고’는 ‘하지 않고’로 바꾼다.

IV. 국회법 순화안

제162조 (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 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제16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162조 (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 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바로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 토의에 부쳐서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않기로 의결(제16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바로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부의하다’는 ‘토의에 부치다’이므로 쉬운 용어로 바꿀 수 있다.

‘하지 아니하기’로는 ‘하지 않기로’로 바꾼다.

제163조 (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②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순화안] 제163조 (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②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명이 의결되지 않은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은 너무 딱딱한 표현이므로 ‘의결되지 않은 때에는’으로 바꾼다.

제164조 (제명된 자의 입후보제한)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순화안] 제164조 (제명된 사람의 입후보제한)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IV. 국회법 순화안

‘자(者)’는 ‘사람’으로 바꾼다.

제165조 (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166조 (규칙제정) ①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이 법 및 제1항의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전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순화안] 제166조 (규칙제정) ①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이 법 및 제1항의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전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아니하는’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를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어서 ‘않는’으로 하는 것이 좋다.

《 부 록 》

순화조문대비표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u>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 2 조 (당선통지 및 등록)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u>통지하여야 한다.</u> ②국회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u>제시하고</u> 등록하여야 한다.</p> <p>제 3 조 (의석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u>잠정적으로</u> 이를 정한다.</p> <p>제 4 조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u>집회한다.</u>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u>집회한다.</u></p> <p>제 5 조 (임시회) ①임시회의 <u>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u> 의장은 <u>집회기일 3일전에</u> 공고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u>집회일이 빠른 것을</u> 공고하되, <u>집회일이 같은 때에는</u>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u>규정에 불구하고</u>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u>집회기일 1일 전에</u> 공고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u>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u></p> <p>제 2 조 (당선알림 및 등록)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u>알려야 한다.</u> ②국회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u>내보이고</u> 등록하여야 한다.</p> <p>제 3 조 (의석배정) <u>의장이</u>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u>협의하여</u> 국회의원의 의석을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u>잠정적으로</u> 이를 정한다.</p> <p>제 4 조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u>집회된다.</u>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u>집회된다.</u></p> <p>제 5 조 (임시회) ①임시회에 대한 <u>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u> 의장은 <u>집회날짜 3일전에</u> 공고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u>집회일이 빠른 것을</u> 공고하되, <u>집회일이 같은 때에는</u>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u>규정에도 불구하고</u>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u>집회날짜 1일 전에</u> 공고할 수 있다.</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입사회는 의원의 임기개시후 7일에 <u>집회하며</u>,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전 5일까지 <u>집회한다</u>.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u>집회한다</u>.</p>	<p>③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입사회는 의원의 임기개시후 7일에 <u>집회되며</u>,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전 5일까지 <u>집회된다</u>.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u>집회된다</u>.</p>
<p>제 2 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p>	<p>제 2 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p>
<p>제 7 조 (회기) ①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국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p>	<p>제 7 조 (회기) ①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u>결</u>하여지며,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국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u>정해</u>져야 한다.</p>
<p>제 8 조 (휴회) ①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국회는 휴회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p>	<p>제 8 조 (휴회) ①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국회는 휴회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p>
<p>제 3 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p>	<p>제 3 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p>
<p>제 9 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u>2년으로 한다</u>.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임기간으로 한다</u>.</p>	<p>제 9 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u>2년이다</u>.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임기간이다</u>.</p>
<p>제10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p>	<p>제10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p>
<p>제11조 (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p>	<p>제11조 (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3.2.4></p>	<p>제17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3.2.4></p>
<p>제18조 (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의장등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의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1.13, 2000.2.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만료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p>제18조 (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의장등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의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1.13, 2000.2.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만료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p>제19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p>	<p>제19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p>
<p>제20조 (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①의장과 부의장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p>	<p>제20조 (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①의장과 부의장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p>
<p>제20조의2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p>	<p>제20조의2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위 임기만</p>	<p>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위 임기만</p>
<p>제12조 (부의장의 직행직무대행) ①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2.3.7></p>	<p>제12조 (부의장의 직행직무대행) ①의장에 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2.3.7></p>
<p>제13조 (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p>	<p>제13조 (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임시의장으로 하여금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p>
<p>제14조 (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국회의원총선거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입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4조 (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국회의원총선거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입시회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5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개정 1994.6.28> ③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00.2.16></p>	<p>제15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된다.<개정 1994.6.28> ③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00.2.16></p>
<p>제16조 (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p>	<p>제16조 (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바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④도서관장은 국회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행한다.</p> <p>⑤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22조의2 (국회예산정책처) ①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p> <p>②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p> <p>③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p> <p>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3.7.18]</p> <p>제23조 (국회의 경비) ①국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한다.</p> <p>②의장은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다만, 예산회계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기일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소관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소관예산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2.4></p> <p>③제1항의 예산중에는 예비금을 둔다.</p> <p>④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다만,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으로 지출하고 다음 회기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p> <p>⑤정부가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소관세출예산요구액의 삭감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p>	<p>④도서관장은 국회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행한다.</p> <p>⑤이 법에 정한 사항 이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22조의2 (국회예산정책처) ①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p> <p>②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p> <p>③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p> <p>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3.7.18]</p> <p>제23조 (국회의 경비) ①국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계산하여 올린다.</p> <p>②의장은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다만, 예산회계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날짜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소관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소관예산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2.4></p> <p>③제1항의 예산중에는 예비금을 둔다.</p> <p>④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다만,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고 다음 회기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p> <p>⑤정부가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소관세출예산요구액의 삭감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삭감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국무회의의 7일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송부하여</p>	<p>삭감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국무회의의 7일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보내야 한다.</p>
<p>제21조 <신설 2000.7.16>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본조신설 2002.3.7]</p>	<p>제21조 <신설 2000.7.16>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본조신설 2002.3.7]</p>
<p>제21조 (국회사무처) ①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개정 1994.6.28> ②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④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 2005.7.28> ⑥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4.6.28> ⑦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21조 (국회사무처) ①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개정 1994.6.28> ②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④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 2005.7.28> ⑥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4.6.28> ⑦이 법에 정한 사항 이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21조의2 [중전 제21조의2는 제22조의2로 이동 <1995.3.3>]</p>	<p>제21조의2 [중전 제21조의2는 제22조의2로 이동 <1995.3.3>]</p>
<p>제22조 (국회도서관) ①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②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p>	<p>제22조 (국회도서관) ①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②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p>

현행	개정안
<p>제29조 (겸직) ①의원은 정치활동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u>규정에 불구하고</u>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 <개정 1994.6.28, 2003.2.4, 2004.12.31, 2005.7.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대통령·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지방의회의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 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 6. 정당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p>②의원이 당선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에 그 직에서 해직된다.</p> <p>③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중 그 <u>교원의 직은 휴직된다.</u> <개정 1994.6.28></p> <p>④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이내에, 임기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⑤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29조 (겸직) ①의원은 정치활동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u>규정에도 불구하고</u>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 <개정 1994.6.28, 2003.2.4, 2004.12.31, 2005.7.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대통령·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지방의회의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 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 6. 정당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p>②의원이 당선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에 그 직에서 해직된다.</p> <p>③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중 그 <u>교원의 직을 휴직한다.</u> <개정 1994.6.28></p> <p>④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이내에, 임기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⑤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30조 (수당·현비) 의 행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어비를 받 ⑥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가 있을 때에는 그 삭감내용에 대한 의견 서를 당해국무회의의 1일전까지 정부에 송부한다.<신설 2000.2.16></p>	<p>제30조 (수당·재비)정의 원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어비를 받 ⑥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가 있을 때에는 그 삭감내용에 대한 의견 서를 해당국무회의의 1일전까지 정부에 보낸다.<신설 2000.2.16></p>
<p>제 4 장 의 원</p>	<p>제 4 장 의 원</p>
<p>제24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p>	<p>제24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p>
<p>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p>	<p>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p>
<p>제26조 (체포동의요청의 절차) ①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u>지체없이</u> 그 사본을 <u>첨부하여</u>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u>표결한다</u>. <신설 2005.7.28></p>	<p>제26조 (체포동의요청의 절차) ①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u>바로</u> 그 사본을 <u>덧붙여서</u>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u>표결에 붙인다</u>. <신설 2005.7.28></p>
<p>제27조 (의원체포의 <u>통지</u>)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u>지체없이</u>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u>첨부하여</u>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 <u>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u>.</p>	<p>제27조 (의원체포의 <u>알림</u>)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u>바로</u>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u>덧붙여서</u> 이를 <u>알려야</u> 한다. 구속기간이 연장된 때에도 <u>같다</u>.</p>
<p>제28조 (석방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p>	<p>제28조 (석방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p>

현 행	개 정 안
<p>②정책연구위원은 당해 교섭단체대표의 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명한다.</p> <p>③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자격·임면절차·직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국회규칙으로 정한다.</u></p>	<p>②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대표의 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명한다.</p> <p>③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자격·임면절차·직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국회규칙에서 정한다.</u></p>
<p>제35조 (위원회의 종류) <u>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u></p>	<p>제35조 (위원회의 종류) <u>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가지가 있다.</u></p>
<p>제3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p>	<p>제3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p>
<p>제3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3.18, 2000.2.16, 2002.3.7, 2003.2.4, 2003.7.18, 2005.7.28></p>	<p>제3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3.18, 2000.2.16, 2002.3.7, 2003.2.4, 2003.7.18, 2005.7.28></p>
<p>1. 국회운영위원회</p> <p>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p> <p>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p> <p>다. 국회사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라. 국회도서관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마. 국회예산정책처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바. 대통령비서실소관에 속하는 사항</p> <p>사. 대통령경호실소관에 속하는 사항</p> <p>2. 법제사법위원회</p> <p>가. 법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법제처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다. 감사원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라. 헌법재판소사무에 관한 사항</p> <p>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p> <p>바. 국가인권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p> <p>사. 국가청렴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p> <p>아.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p> <p>자.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p> <p>3. 정부위원회</p> <p>가. 국무총리실소관에 속하는 사항</p>	<p>1. 국회운영위원회</p> <p>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p> <p>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p> <p>다. 국회사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라. 국회도서관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마. 국회예산정책처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바. 대통령비서실소관에 속하는 사항</p> <p>사. 대통령경호실소관에 속하는 사항</p> <p>2. 법제사법위원회</p> <p>가. 법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법제처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다. 감사원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라. 헌법재판소사무에 관한 사항</p> <p>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p> <p>바. 국가인권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p> <p>사. 국가청렴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p> <p>아.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p> <p>자.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p> <p>3. 정부위원회</p> <p>가. 국무총리실소관에 속하는 사항</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나. 국가보훈처소관 <u>안</u>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국가보훈처소관 <u>안</u>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p>
<p>제31조 (교통수단이용) 의원은 <u>승차료</u>의 할 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u>승용할</u> <u>수 있다</u>. 다만, 폐회중에는 <u>공무의 경</u> <u>우에 한한다</u>.</p>	<p>제31조 (교통수단이용) 의원은 <u>승차료</u>의 할 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u>탈 수 있</u> <u>다</u>. 다만, 폐회중에는 <u>공무의 경우에만</u> <u>무료로 탈 수 있다</u>.</p>
<p>제32조 (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 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 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 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 하는 금액을 <u>감액한다</u>.<신설 1994.6.28> ③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u>국회규칙으로 정한다</u>.</p>	<p>제32조 (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 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 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 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 하는 금액을 <u>줄인다</u>.<신설 1994.6.28> ③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u>국회규칙에서 정한다</u>.</p>
<p>제 5 장 교섭단체 · 위원회와 위원</p>	<p>제 5 장 교섭단체 · 위원회와 위원</p>
<p>제33조 (교섭단체) ①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 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 속의원이 <u>연서·날인한</u>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u>소속의원에 이</u> <u>동이 있거나</u>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u>지체없이</u>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u>당해 의원이</u> 관계서류를 <u>첨부하여</u>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6.28> ③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u>아니하는</u>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3조 (교섭단체) ①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 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 속의원이 <u>서명하고 도장찍은</u> 명부를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u>소속의원의</u> <u>이동이 있거나</u>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 을 때에는 그 사실을 <u>바로</u> 의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u>해당 의원이</u> 관계서류를 <u>덧</u> <u>붙여서</u>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6.28> ③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u>아니하는</u>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4조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①교섭단 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 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p>	<p>제34조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①교섭단 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 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p>

현행	개정안
<p>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p> <p>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u>아니하는</u>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p> <p>제38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u>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u>12인</u>으로 한다.<개정 1994.6.28></p> <p>제39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2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5.7.28> ②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조정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1998.3.18></p> <p>제40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의 임기는 <u>2년</u>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1994.6.28> ②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u>규정에 불구하고</u> 의원의 임기동안 재임한다. <신설 1994.6.28> ③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0.6.29></p> <p>제40조의2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p>	<p>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p> <p>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u>않는</u>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p> <p>제38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u>국회규칙에서 정한다</u>.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u>12인</u>이다.<개정 1994.6.28></p> <p>제39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2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5.7.28> ②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조정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1998.3.18></p> <p>제40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의 임기는 <u>2년</u>이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1994.6.28> ②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u>규정에도 불구하고</u> 의원의 임기동안 재임한다. <신설 1994.6.28> ③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0.6.29></p> <p>제40조의2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p>본조 신설 제90원(제8)</p> <p>가. 재정경제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다. 한국은행소관에 속하는 사항</p> <p>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가. 통일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외교통상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p> <p>6. 국방위원회 가. 국방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p> <p>7. 행정자치위원회 가. 행정자치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앙인사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p> <p>8. 교육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p> <p>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정보통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p> <p>10. 문화관광위원회 가. 문화관광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정홍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방송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p> <p>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소관에 속하는 사항</p> <p>12. 산업자원위원회 가. 산업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p> <p>13.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소관에 속하는 사항</p> <p>14.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노동부소관에 속하는 사항</p> <p>15.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p> <p>16.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본조 신설 제90원(제8)</p> <p>가. 재정경제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다. 한국은행소관에 속하는 사항</p> <p>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가. 통일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외교통상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p> <p>6. 국방위원회 가. 국방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p> <p>7. 행정자치위원회 가. 행정자치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앙인사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p> <p>8. 교육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p> <p>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정보통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p> <p>10. 문화관광위원회 가. 문화관광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정홍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방송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p> <p>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소관에 속하는 사항</p> <p>12. 산업자원위원회 가. 산업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p> <p>13.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소관에 속하는 사항</p> <p>14.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노동부소관에 속하는 사항</p> <p>15.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p> <p>16.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소관에 속하는 사항</p>

현 행	개 정 안
<p>⑥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p> <p>제43조 (전문가의 활용)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0.2.16></p> <p>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등을 조정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u>아니하는</u>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u>아니하는</u> 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p> <p>④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p> <p>[본조신설 1991.5.31]</p>	<p>⑥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p> <p>제43조 (전문가의 활용)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0.2.16></p> <p>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등을 조정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u>않는</u>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u>않는</u> 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p> <p>④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p> <p>[본조신설 1991.5.31]</p>
<p>제44조 (특별위원회) ①국회는 <u>수개의</u>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u>인정한</u>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u>종료시까지</u>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u>종료시까지</u>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p>	<p>제44조 (특별위원회) ①국회는 <u>여러개의</u>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u>인정되는</u>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u>종료때까지</u>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u>종료때까지</u>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28></p>	<p>될 때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28></p>
<p>제41조 (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거한다.<개정 1994.6.28>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신설 1994.6.28>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p> <p>제42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임법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6.28> ②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8> ③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 <신설 1994.6.28> ⑤ 전문위원은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 2005.7.28></p>	<p>제41조 (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거한다.<개정 1994.6.28>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부터 3일 안에 실시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된다. <신설 1994.6.28>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p> <p>제42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임법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개정 1994.6.28> ②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8> ③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 <신설 1994.6.28> ⑤ 전문위원은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 2005.7.28></p>

현행	개정안
<p>제46조의2 삭제 <2002.3.7></p> <p>제46조의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2.4></p> <p>②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0.2.16]</p> <p>제47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u>호선하고</u> 본회의에 보고한다.</p> <p>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p> <p>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u>비율에 의하여</u>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u>이내</u>에 그리고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p>	<p>제46조의2 삭제 <2002.3.7></p> <p>제46조의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2.4></p> <p>②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0.2.16]</p> <p>제47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u>서로 뽑고</u> 본회의에 보고한다.</p> <p>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p> <p>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u>비율에 따라서</u>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u>안에</u>에 그리고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p>	<p>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p>
<p>제4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2.4>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¹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 제41조제3항 내지 제5항,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0.2.16]</p> <p>제46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4.6.28>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4.6.28>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에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5.31]</p>	<p>제43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2.4>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이다. 이 경우 그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시작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된다. 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⑥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 준용된다. [전문개정 2000.2.16]</p> <p>제46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1994.6.28>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에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1991.5.31]</p>

현 행	개 정 안
<p>제50조 (간사) ①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u>호선하고</u>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예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u>아니하여</u>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u>소속하지 아니하는</u>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90.6.29></p>	<p>제50조 (간사) ①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u>서로 뽑고</u>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예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u>않아</u>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u>소속하지 않은</u>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90.6.29></p>
<p>제51조 (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p>	<p>제51조 (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p>
<p>제52조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u>개회한다</u>. [전문개정 1994.6.28]</p>	<p>제52조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u>개회된다</u>. [전문개정 1994.6.28]</p>
<p>제53조 (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폐회중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u>개회</u>(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정보위원회는 최소한 월 1회로 한다. ②상임위원회는 정례회의의 개최일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1회는 미리 그 개최 주·요일을 지정하여 자동 <u>개회</u>한다.<개정 1997.1.13></p>	<p>제53조 (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폐회중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u>개회</u>(이하 “정례회의”라 한다)된다. 다만, 정보위원회는 최소한 월 1회로 한다. ②상임위원회는 정례회의의 개최일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1회는 미리 그 개최 주·요일을 지정하여 자동 <u>개회</u>된다.<개정 1997.1.13></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③정례회의는 <u>당해 상임</u>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및 청원 기타 안건과 주 <u>요형안</u>을 <u>상임</u>할 때에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7.28></p> <p>②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u>아니하는</u>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p> <p>③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교섭단체소속의원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1995.3.3, 1998.3.18, 2000.2.16></p> <p>④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⑤위원의 선임이 있을 후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p> <p>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신설 2003.2.4></p> <p>⑦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u>아니된다</u>. [전문개정 1994.6.28]</p> <p>제4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p>	<p>③정례회의는 <u>개당해 상임</u>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및 청원 기타 안건과 주 <u>요형안</u>을 <u>상임</u>할 때에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7.28></p> <p>②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u>않는</u>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p> <p>③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소속의원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1995.3.3, 1998.3.18, 2000.2.16></p> <p>④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⑤위원의 선임이 있을 후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p> <p>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u>안에는</u>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 <신설 2003.2.4></p> <p>⑦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u>안된다</u>. [전문개정 1994.6.28]</p> <p>제4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p>
--	--

현행	개정안
<p>제57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개정 2000.2.16, 2005.7.28></p> <p>③상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p> <p>④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p> <p>⑤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2.16></p> <p>⑥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p> <p>⑦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2.16></p> <p>⑧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외에 그 심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수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개정 1991.5.31]</p>	<p>제57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개정 2000.2.16, 2005.7.28></p> <p>③상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되고, 이는 본회의에 보고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p> <p>④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p> <p>⑤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0.2.16></p> <p>⑥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이름으로 한다.</p> <p>⑦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0.2.16></p> <p>⑧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외에 그 심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개정 1991.5.31]</p>
<p>제58조 (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p>	<p>제58조 (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p>	<p>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p>
<p>④개정 2000.2.16>정례회의 당일의 의사 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6.28]</p>	<p>④개정 2000.2.16>정례회의 당일의 의사 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6.28]</p>
<p>제54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1.13></p>	<p>제54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1.13></p>
<p>제54조의2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p>	<p>제54조의2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p>
<p>②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무원(의원보조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무원(의원보조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p>
<p>③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p>	<p>③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p>
<p>④이 법에 정한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6.28]</p>	<p>④이 법에 정한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1994.6.28]</p>
<p>제55조 (위원회에서의 방청등) ①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p>	<p>제55조 (위원회에서의 방청등) ①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p>
<p>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제56조 (본회의중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6조 (본회의중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최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p>

현 행	개 정 안
<p>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개정 1994.6.28, 2000.2.16, 2003.2.4, 2005.7.28> [본조신설 1991.5.31]</p>	<p>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개정 1994.6.28, 2000.2.16, 2003.2.4, 2005.7.28> [본조신설 1991.5.31]</p>
<p>제60조 (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안에서 각 위원의 첫번째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6.28></p> <p>②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7.1.13></p>	<p>제60조 (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안에서 각 위원의 첫번째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6.28></p> <p>②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7.1.13></p>
<p>제61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전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p>	<p>제61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전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p>
<p>제62조 (비공개회의특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기타 <u>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u>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p>	<p>제62조 (비공개회의특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기타 <u>비밀참고자료에 대한 열람요구</u>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p>
<p>제63조 (연석회의) ①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p> <p>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u>부의할</u> 안전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p>	<p>제63조 (연석회의) ①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p> <p>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u>토론에 부칠</u> 안전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요구하여야 한다.</p> <p>③연석회의는 <u>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u></p> <p><u>상임위원회의</u>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00.2.16></p> <p>③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토론이 끝난 후가 아니면 회부할 수 없다.</p> <p>④제1항 및 제3항의 <u>규정에 불구하고</u>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이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7.28></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u>그렇지 아니하다</u>. <신설 2000.2.16, 2005.7.28></p> <p>⑥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05.7.28></p> <p>⑦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당해</u>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48시간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p> <p>⑨제5항 단서 및 제6항의 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2.16, 2005.7.28> [전문개정 1994.6.28]</p> <p>제59조 (법률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p>	<p>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p> <p>③연석회의는 <u>안건에 대한 소관위원회</u></p> <p><u>상임위원회의</u>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00.2.16></p> <p>③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토론이 끝난 후가 아니면 회부할 수 없다.</p> <p>④제1항 및 제3항의 <u>규정도 불구하고</u>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이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7.28></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u>그렇지 않다</u>. <신설 2000.2.16, 2005.7.28></p> <p>⑥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05.7.28></p> <p>⑦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해당</u>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48시간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p> <p>⑨제5항 단서 및 제6항의 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설 2000.2.16, 2005.7.28> [전문개정 1994.6.28]</p> <p>제59조 (법률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p>
---	---

현 행	개 정 안
<p>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인 및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u>아니된다.</u></p> <p><개정 1994.6.28></p> <p>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p> <p>⑤기타 공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국회규칙으로 정한다.</u></p> <p>제65조 (청문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00.2.16></p> <p>②제1항의 <u>규정에 불구하고</u>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u>개회할 수 있다.</u>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5.7.28></p> <p>③위원회는 청문회개회 5일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p> <p>④청문회는 <u>공개한다.</u>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2.16></p> <p>⑥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다.</p> <p>⑦제6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청</p>	<p>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인 및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u>안된다.</u></p> <p><개정 1994.6.28></p> <p>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p> <p>⑤기타 공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국회규칙에서 정한다.</u></p> <p>제65조 (청문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00.2.16></p> <p>②제1항의 <u>규정에도 불구하고</u>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u>개회될 수 있다.</u>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5.7.28></p> <p>③위원회는 청문회개회 5일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p> <p>④청문회는 <u>공개된다.</u>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2.16></p> <p>⑥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다.</p> <p>⑦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문회에 준용한다.< 개정 1991.5.31> ⑧기타 청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p>	<p>청문회에 준용된다.< 개정 1991.5.31> ⑧기타 청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p>
<p>회칙에 <u>회칙에</u> 상인정한다 <u>상인정한다</u> 관련있는 법안을 회부</p>	<p>회칙에 <u>회칙에</u> 상인정한다 <u>상인정한다</u> 관련있는 법안을 회부</p>
<p>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p>	<p>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p>
<p>제63조의2 (전원위원회) ①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등 주요의안의 본회의상정전이나 본회의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u>아니</u>할 수 있다. ②전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u>해당</u> 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③전원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④전원위원회는 제54조의 규정에 <u>불구</u>하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삭 제 <2005.7.28> ⑥기타 전원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국회규칙</u>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p>	<p>제63조의2 (전원위원회) ①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등 주요의안의 본회의상정전이나 본회의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u>않을</u> 수 있다. ②전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u>해당</u> 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③전원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④전원위원회는 제54조의 <u>규정도</u> 불구하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삭 제 <2005.7.28> ⑥기타 전원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국회규칙</u>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p>
<p>제64조 (공청회)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u>자등</u>(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5.7.28></p>	<p>제64조 (공청회)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u>사람등</u>(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5.7.28></p>

현 행	개 정 안
<p>제68조 (소위원회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6.28></p>	<p>제68조 (소위원회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u>덧붙여</u>야 한다. <개정 1994.6.28></p>
<p>제69조 (위원회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5.7.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u>설명</u>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u>설명</u> 5.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u>설명</u> 6. 심사안건명 7. 의 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u>부</u>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00.2.16></p> <p>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u>서명·날인</u>한다.</p> <p>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1.5.31, 2000.2.16, 2005.7.28></p>	<p>제69조 (위원회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5.7.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u>이름</u>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u>이름</u> 5.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u>이름</u> 6. 심사안건명 7. 의 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 <u>토</u>의에 <u>부</u>칠에 <u>부</u>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00.2.16></p> <p>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u>서이름쓰고 도장 찍</u>는다.</p> <p>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70조 (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 ①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등은 <u>당해</u>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p> <p>②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③위원은 <u>당해</u>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p>	<p>제70조 (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 ①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등은 <u>해당</u>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p> <p>②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③위원은 <u>해당</u>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p>	<p>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p>
<p>제65조의2 (인사청문회) 헌제46조의3의 규</p>	<p>제65조의2 (인사청문회) 헌제46조의3의 규</p>
<p>정에 의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개정 2003.2.4> ②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와 대법원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신설 2003.2.4, 2005.7.28> ③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p>	<p>정에 의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개정 2003.2.4> ②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와 대법원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신설 2003.2.4, 2005.7.28> ③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p>
<p>제66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66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67조 (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1991.5.31>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p>	<p>제67조 (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1991.5.31>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더할 수(보탈 수) 없다.</p>

현 행	개 정 안
<p>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00.2.16></p> <p>제74조 (산회)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p> <p>제75조 (회의의 공개) ①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p> <p>제7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본회의에 부의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00.2.16> ②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개정 2005.7.28>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5.7.28> ④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신설 2005.7.28> ⑤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p> <p>제77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 이상</p>	<p>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00.2.16></p> <p>제74조 (산회)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p> <p>제75조 (회의의 공개) ①본회의는 공개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u>출서명에</u>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u>않을</u>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u>않고</u> 표결한다.</p> <p>제7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본회의 <u>의 토의에</u> 부치는 것이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00.2.16> ②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개정 2005.7.28>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u>않을</u>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5.7.28> ④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을 <u>바로</u> 의원에게 <u>알리고</u>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신설 2005.7.28> ⑤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u>알리고</u> 개의할 수 있다.</p> <p>제77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 이</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의 연서에 의함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면 수정안제출을 기약함</p>	<p>상의 출서명에 의함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상의하여 필요하면 다수정안제출 때</p>
<p>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이를 정한다.<신설 1994.6.28> ⑥기타 위원회의 문서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1.5.31]</p> <p>제71조 (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외에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동의자와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에 있어서는 <u>거수로</u> 표결할 수 있다.</p>	<p>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나누어 주고 일반에게 반포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이를 정한다.<신설 1994.6.28> ⑥기타 위원회의 문서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1.5.31]</p> <p>제71조 (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외에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는 <u>규정에도 불구하고</u> 동의자와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에 있어서는 <u>손드는 것으로</u> 표결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개의 · 산회와 의사일정</p> <p>제72조 (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u>개의</u>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6.28]</p> <p>제73조 (의사정족수) ①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u>개의</u>한다.<개정 1997.1.13> ②의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u>달하지</u>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③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u>달하지</u>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개의 · 산회와 의사일정</p> <p>제72조 (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u>개의</u>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6.28]</p> <p>제73조 (의사정족수) ①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u>개의</u>된다.<개정 1997.1.13> ②의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u>이르지</u>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③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u>이르지</u>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p>

현행	개정안
<p>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u>첨부</u>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국회규칙으로 정한다.</u></p> <p>[본조신설 2005.7.28]</p> <p>제80조 (국회공보의 발간<개정 2005.7.28>) ①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예정인 의안목록, 국회의 주요행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회공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u>배부</u>한다. ②제1항의 국회공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기중 매일 <u>발간</u>한다. ③삭제 <2005.7.28> ④국회공보의 발간 및 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5.7.28> [본조신설 1991.5.31]</p> <p>제81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u>배부</u>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u>부의</u>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u>아니</u>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u>아니</u>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u>인정</u>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u>규정</u>에 불구</p>	<p>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u>덧붙</u>여야 한다.</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국회규칙에서 정한다.</u></p> <p>[본조신설 2005.7.28]</p> <p>제80조 (국회공보의 발간<개정 2005.7.28>) ①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예정인 의안목록, 국회의 주요행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회공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u>나누어</u> 준다. ②제1항의 국회공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기중 매일 <u>발간</u>된다. ③삭제 <2005.7.28> ④국회공보의 발간 및 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5.7.28></p> <p>제81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u>나누어 주고</u>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u>본회의 토의</u>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u>않을</u>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u>않을</u>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u>인정</u>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u>규정</u>에도 불</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u>하고 그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u></p>	<p><u>구하고 그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u></p>
<p><u>활기찬 대의사실정 2005.7.28을 변경하거</u></p>	<p><u>예산 의정원대회신설채 2005.7.28정의 일</u></p>
<p>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u>아니하고</u> 표결한다. <개정 2005.7.28></p>	<p>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u>덧붙여야</u>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u>않고</u> 표결한다. <개정 2005.7.28></p>
<p>제7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p>	<p>제7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p>
<p>제 2 절 발의·위원회회부·철회와 번안</p>	<p>제 2 절 발의·위원회회부·철회와 번안</p>
<p>제79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03.2.4></p>	<p>제79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03.2.4></p>
<p>②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u>연서하여</u>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p>	<p>②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u>출서명하여</u>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p>
<p>③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u>당해</u>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설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u>명시하여야</u> 한다. <신설 2000.2.16></p>	<p>③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u>해당</u>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이름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u>드러내 보여야</u> 한다. <신설 2000.2.16></p>
<p>④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u>당해</u>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05.7.28></p>	<p>④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u>해당</u>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05.7.28></p>
<p>제79조의2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u>조치를 수반하는</u>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9조의2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u>조치가 따르는</u>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u>조치를 수반하는</u>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p>	<p>②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u>조치가 따르는</u>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u>따르게 될</u> 것으로 예상되는 비</p>

현행	개정안
<p>제83조의2 (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①기획예산처소관에 속하는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②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협의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소관위원회는 기획예산처소관에 속하는 법률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p> <p>④소관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이루어지지 <u>아니하는</u> 경우에는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p> <p>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국회규칙으로 정한다.</u></p> <p>[본조신설 2005.7.28]</p>	<p>제83조의2 (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①기획예산처소관에 속하는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u>따르는</u>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②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협의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소관위원회는 기획예산처소관에 속하는 법률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p> <p>④소관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이루어지지 <u>않는</u> 경우에는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p> <p>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따르는 법률안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국회규칙에서 정한다.</u></p> <p>[본조신설 2005.7.28]</p>
<p>제84조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개정 1994.6.28>) ①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u>회부하고</u>,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p> <p><개정 1994.6.28></p> <p>②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p>	<p>제84조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개정 1994.6.28>) ①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u>회부되고</u>,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p> <p><개정 1994.6.28></p> <p>②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u>본회의 토의에 부친다.</u>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부 또는 해당기관은 신청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3.2.4></p>	<p>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신청요구를 받은 사항을 바로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3.2.4></p>
<p>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p>	<p>을 의원에게 나누어 줄 때에는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p>
<p>제82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제82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제82조의2 (입법예고) ①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주요내용등을 국회공보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입법예고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6.28]</p>	<p>제82조의2 (입법예고) ①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주요내용등을 국회공보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입법예고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1994.6.28]</p>
<p>제83조 (관련위원회회부) ①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2항의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p>	<p>제83조 (관련위원회회부) ①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2항의 기간 안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p>

현행	개정안
<p>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①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p> <p>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01.12.31]</p>	<p>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①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p> <p>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01.12.31]</p>
<p>제84조의3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5.7.28]</p>	<p>제84조의3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5.7.28]</p>
<p>제85조 (심사기간) ①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p> <p>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p>	<p>제85조 (심사기간) ①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p> <p>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의 토의에 부칠 수 있다.</p>
<p>제86조 (체계·자구의 심사) ①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심사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기</p>	<p>제86조 (체계·자구의 심사) ①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심사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기</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u>않</u>아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p>	<p>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u>않</u>아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 <u>토의</u>에 부칠 수 있다.</p>
<p>③ 예산 2000특별위원회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함에 있어서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할당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신설 1994.6.28></p> <p>④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u>에 불구하고</u> 국가정보원소관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신설 1994.6.28, 2000.2.16></p> <p>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u>삭감한</u>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u>아니한</u>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1.5.31, 2002.3.7, 2003.2.4></p> <p>⑥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u>아니한</u>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⑦삭 제 <2003.2.4></p> <p>⑧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u>세입예산안</u>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p>	<p>③ 예산 2000특별위원회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함에 있어서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할당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신설 1994.6.28></p> <p>④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u>에도 불구하고</u> 국가정보원소관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신설 1994.6.28, 2000.2.16></p> <p>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u>깎인</u>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u>안에</u>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알려지지 <u>않은</u>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1.5.31, 2002.3.7, 2003.2.4></p> <p>⑥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안에 심사를 마치지 <u>않은</u>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⑦삭 제 <2003.2.4></p> <p>⑧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u>세입예산안</u>을 심사할 수 없다.</p>

현 행	개 정 안
<p>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0.2.16]</p> <p>제92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p> <p>제 3 절 의사와 수정</p> <p>제93조 (안건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u>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u></p> <p>제93조의2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①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정기회 기간중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u>상정하는</u>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신설 2003.2.4> [본조신설 2002.3.7]</p> <p>제94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0.2.16]</p> <p>제92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p> <p>제 3 절 의사와 수정</p> <p>제93조 (안건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u>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u></p> <p>제93조의2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①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 ②정기회 기간중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u>상정되는</u>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 <신설 2003.2.4> [본조신설 2002.3.7]</p> <p>제94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제95조 (수정동행) ①의행에 대한 수정동 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 제87조(안)항에 찬성(가)된(안)이①위원 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 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 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p> <p>제88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 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 결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제89조 (동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와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p> <p>제90조 (의안·동의의 철회) ①의원은 그 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 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 제가 된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제91조 (변안) ①본회의에 있어서의 변안 동의를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 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부 또는 위 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 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 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그러나 의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 는 변안할 수 없다. ②위원회에 있어서의 변안동의를 위원 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 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p>	<p>제95조 (수정동제) ①정의안에 대한 수정동 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제87조(안)항에 찬성(가)된(안)이①위원 회에서 본회의 토의에 부칠 필요가 없 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 토의에 부 치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 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안에 의원 30 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 을 본회의 토의에 부쳐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p> <p>제88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 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 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제89조 (동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와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p> <p>제90조 (의안·동의의 철회) ①의원은 그 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 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 제가 된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제91조 (변안) ①본회의에 있어서의 변안 동의를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 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부 또는 위 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 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 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그러나 의안이 정부에 옮겨 보내진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②위원회에 있어서의 변안동의를 위원 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 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p>
--	---

현 행	개 정 안
<p>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개정 2002.3.7, 2005.7.28></p> <p>②제1항의 기간 <u>이내에</u>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u>통지</u>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8></p> <p>③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u>당해</u>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p> <p>④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u>당해</u>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개정 2005.7.28> [전문개정 2000.2.16]</p>	<p>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u>안에</u>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u>안에</u> 제출하여야 한다.</p> <p><개정 2002.3.7, 2005.7.28></p> <p>②제1항의 기간 <u>안에</u>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u>알려야</u> 한다. <신설 2005.7.28></p> <p>③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u>해당</u>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u>바로</u>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p> <p>④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u>해당</u>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개정 2005.7.28> [전문개정 2000.2.16]</p>
<p>제 4 절 발 언</p> <p>제99조 (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u>통지</u>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발언통지를 <u>하지</u>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p>	<p>제 4 절 발 언</p> <p>제99조 (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u>알려</u>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발언통지를 <u>하지 않은</u>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③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p>	<p>③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의</p>
<p>의장에 제재 권력 행사를 할 수 없다. 긴급히 내리</p>	<p>책에 제재 권력 행사를 할 수 없다. 긴급히 내리</p>
<p>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이 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p>	<p>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이 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되어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p>
<p>제96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u>수개의</u>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p>	<p>제96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u>여러 개의</u>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u>여러 개</u>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p>
<p>제97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p>	<p>제97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p>
<p>제98조 (의안의 이송) ①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u>이송한다</u>. ②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u>지체없이</u> 국회에 <u>통지</u>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③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u>5일 이내</u>에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u>통지</u>하여야 한다.</p>	<p>제98조 (의안의 옮겨 보냄) ①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u>옮겨 보낸다</u>. ②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u>바로</u> 국회에 <u>알려야</u> 한다. <신설 2002.3.7> ③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u>5일 안에</u>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u>알려야</u> 한다.</p>
<p>제98조의2 (대통령령등의 제출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p>	<p>제98조의2 (대통령령등의 제출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p>

현행	개정안
<p>③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한 총발언시간을 정하여 이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할당된 시간내에서 발언자수 및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u>통보</u>하여야 한다.</p> <p>④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수를 정할 수 있다.</p> <p>⑤교섭단체에 속하지 <u>아니하는</u>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p> <p>⑥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1994.6.28]</p>	<p>③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한 총발언시간을 정하여 이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할당된 시간내에서 발언자수 및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u>알려</u>야 한다.</p> <p>④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수를 정할 수 있다.</p> <p>⑤교섭단체에 속하지 <u>않는</u>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p> <p>⑥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u>대해서는</u>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1994.6.28]</p>
<p>제105조 (5분자유발언<개정 1997.1.13>)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u>아니하는</u>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중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p> <p><개정 1997.1.13, 2000.2.16></p> <p>②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개의 4시간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개정 1997.1.13, 2000.2.16></p> <p>③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p>	<p>제105조 (5분자유발언<개정 1997.1.13>)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u>않는</u>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중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p> <p><개정 1997.1.13, 2000.2.16></p> <p>②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개의 4시간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개정 1997.1.13, 2000.2.16></p> <p>③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려하여 의장의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7.1.13></p>	<p>려하여 의장의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7.1.13></p>
<p>원 정 제 104조(제1항) 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p>	<p>원 정 제 104조(제1항) 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p>
<p>제100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p>	<p>제100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p>
<p>제101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제101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제102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지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02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지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된다.</p>
<p>제103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3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p>
<p>제104조 (발언원칙) ①정부에 대한 질문외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2.16></p>	<p>제104조 (발언원칙) ①정부에 대한 질문외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2.16></p>
<p>②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하되,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2.4></p>	<p>②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하되,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2.4></p>

현 행	개 정 안
<p>②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p> <p>제112조 (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0.2.16></p> <p>②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1994.6.28, 2000.2.16></p> <p>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p> <p>④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p> <p>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개정 1994.6.28></p> <p>⑥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p> <p>⑦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u>기간내에</u>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2.4></p>	<p>②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p> <p>제112조 (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0.2.16></p> <p>②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1994.6.28, 2000.2.16></p> <p>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p> <p>④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p> <p>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개정 1994.6.28></p> <p>⑥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p> <p>⑦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u>안에</u>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u>기간 안에</u>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2.4></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제113조 (표결결의선포) 행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개정 2002.3.7>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p> <p>제107조 (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p> <p>제108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p> <p>②각 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그러나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p> <p>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u>아니</u>하고 표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절 표 결</p> <p>제109조 (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10조 (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p> <p>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p> <p>제111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u>있지</u> <u>아니</u>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0.2.16></p>	<p>제113조 (표결결의선포) 행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개정 2002.3.7>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u>알려</u>야 한다.</p> <p>②의장은 제1항의 <u>알림</u>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p> <p>제107조 (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p> <p>제108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p> <p>②각 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그러나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p> <p>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u>않고</u> 표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절 표 결</p> <p>제109조 (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10조 (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p> <p>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p> <p>제111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u>있지</u> <u>않</u>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0.2.16></p>
---	---

현 행	개 정 안
<p>13. 표결수 14. 기명·전자·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u>성명</u>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17. 정부의 청원처리결과보고서 18.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처리 보고서 19.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③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u>서명·날인하여</u> 국회에 보존한다.</p> <p>제116조 (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11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③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신설 2003.2.4> ④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u>아니하고</u>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p> <p>제118조 (회의록의 배부·반포) ①회의록</p>	<p>13. 표결수 14. 기명·전자·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u>이름</u>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17. 정부의 청원처리결과보고서 18.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처리 보고서 19.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③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u>이름쓰고 도장찍어서</u> 국회에 보존한다.</p> <p>제116조 (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11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③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신설 2003.2.4> ④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u>않고</u>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p> <p>제118조 (회의록의 배부·반포) ①회의록</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u>해당</u> 일반에게 반포한 <u>다</u>.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p>	<p>은 의원에게 배부되고 <u>개</u> 일반에게 반포된 <u>다</u>.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p>
<p>제114조(부정)을 위하여 투표한다.개정 2000.</p>	<p>제114조(부정)을 위하여 투표한다.개정 2000.</p>
<p>2.16>) ①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00.2.16> ②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하는 때에는 당해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의2 (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u>아니하고</u>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본조신설 2002.3.7]</p>	<p>2.16>) ①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개정 2000.2.16> ②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u>그렇지 않다</u>. 제114조의2 (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u>않고</u>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본조신설 2002.3.7]</p>
<p>제 7 장 회의록</p>	<p>제 7 장 회의록</p>
<p>제115조 (회의록) ①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1994.6.28, 2005.7.28>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및 <u>성명</u>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u>인송</u>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u>성명</u>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 사</p>	<p>제115조 (회의록) ①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1994.6.28, 2005.7.28>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및 <u>이름</u>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u> 옮겨 보냄</u>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u>이름</u>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 사</p>

현행	개정안
<p>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6.28></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④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6.28></p> <p>제122조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u>지체없이</u> 이를 정부에 <u>이송한다</u>.</p> <p>③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u>기간내에</u>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u>통지하여야 한다</u>.</p> <p>④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계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p> <p>⑤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p> <p>제122조의2 (정부에 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 또</p>	<p>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6.28></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④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6.28></p> <p>제122조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u>바로</u> 이를 정부에 <u>옮겨 보낸다</u>.</p> <p>③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u>안에</u>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u>기간안에</u>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u>알려야 한다</u>.</p> <p>④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기타 답변관계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p> <p>⑤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p> <p>제122조의2 (정부에 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 또</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내정부질문”이라 함)을 할 수 있다.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p> <p>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반포할 수 있다.</p> <p>⑥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p>	<p>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내정부질문”이라 함)을 할 수 있다.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p> <p>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되지 않은 회의록부분에 관해 열람·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된다.</p> <p>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해서는 안된다.</p> <p>④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p> <p>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반포할 수 있다.</p> <p>⑥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에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p> <p>제119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p> <p>제120조 (국무위원등의 발언)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1991.5.31, 1998.3.18></p> <p>제121조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p> <p>제119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알림)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알린다.</p> <p>제120조 (국무위원등의 발언)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1991.5.31, 1998.3.18></p> <p>제121조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개의 24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p> <p>③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p> <p>⑤긴급현안질문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2.16></p> <p>⑥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⑦긴급현안질문의 절차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6.28]</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개의 24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p> <p>③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p> <p>⑤긴급현안질문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2.16></p> <p>⑥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⑦긴급현안질문의 절차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6.28]</p>
<p>제9장 청원</p>	<p>제9장 청원</p>
<p>제123조 (청원서의 제출) ①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③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p>	<p>제123조 (청원서의 제출) ①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p> <p>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이름(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쓰고 도장찍어야 한다.</p> <p>③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p>
<p>제124조 (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의</p>	<p>제124조 (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의</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한다. <u>대정부질문은 청원서류의 양을 위하여 회부하여 인쇄를 하거나 한부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u></p> <p><개정 2003.2.4></p> <p>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5.7.28></p> <p>④의체별 질문의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2.4></p> <p>⑤의장은 제4항에서 규정한 의체별 질문의원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p> <p><개정 2003.2.4, 2005.7.28></p> <p>⑥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⑦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2.4></p> <p>⑧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일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개의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p> <p>[본조신설 1994.6.28]</p> <p>제122조의3 (긴급현안질문) ①의원은 20인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2.16></p>	<p>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나누어 준다. <u>대정부질문은 그일청원서류 양을 위하여 회부하여 인쇄를 하거나 한부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u></p> <p><개정 2003.2.4></p> <p>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5.7.28></p> <p>④의체별 질문의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2.4></p> <p>⑤의장은 제4항에서 규정한 의체별 질문의원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질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p> <p><개정 2003.2.4, 2005.7.28></p> <p>⑥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p> <p>⑦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2.4></p> <p>⑧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일전일까지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알립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개의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정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3.2.4></p> <p>[본조신설 1994.6.28]</p> <p>제122조의3 (긴급현안질문) ①의원은 20인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2.16></p>
--	---

현 행	개 정 안
<p>제127조의2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①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u>이내에</u>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u>이내에</u>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u>이내에서</u>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2.4]</p>	<p>제127조의2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①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u>안에</u>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u>안에</u>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u>안에서</u>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2.4]</p>
<p>제128조 (보고·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③제1항의 <u>규정에 불구하고</u>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0.2.16> ④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u>보고하여야 한다</u>. <개정 2000.2.16></p>	<p>제128조 (보고·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③제1항의 <u>규정에도 불구하고</u>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0.2.16> ④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u>보고해야 한다</u>. <개정 2000.2.16></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⑤제1항의 <u>요구를 받은 때</u>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요구</u></p> <p>청원의 제1항의 요지를 10일 이내에 심사코자 명하는 청원의 요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p> <p>제125조 (청원심사·보고등) ①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폐회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5.31> ⑤위원회에서 <u>본회의에 부의하기로</u>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⑥위원회에서 <u>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u>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u>통지하여야 한다.</u>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u>이내</u>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u>본회의에 부의한다.</u> ⑦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u>국회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26조 (정부이송과 처리보고) ①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u>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u> ②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u>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p> <p>제127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⑤제1항의 <u>요구를 받은 때</u>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요구를</u></p> <p>청원심사부처에 10일 이내에 심사코자 명하는 청원의 요지·소개의원의 이름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p> <p>제125조 (청원심사·보고등) ①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폐회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5.31> ⑤위원회에서 <u>본회의 토의에 부치기로</u>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⑥위원회에서 <u>본회의 토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u>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u>알려야 한다.</u>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u>안에</u>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u>본회의 토의에 부친다.</u> ⑦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u>국회규칙에서 정한다.</u></p> <p>제126조 (정부이송과 처리보고) ①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덧붙여서 정부에 <u>얹겨 보낸다.</u> ②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바로 국회에 <u>보고해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p> <p>제127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

현 행	개 정 안
<p>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u>기간내에</u>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p> <p>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u>성명</u>·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u>제시하여야 한다</u>.</p> <p>제131조 (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u>지체없이</u> 조사·<u>보고</u> 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p> <p>②제1항의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및 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p> <p>제132조 (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u>완료시키기</u>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u>하여야 한다</u>.</p> <p>제133조 (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u>성명</u>·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u>하여야 한다</u>.</p> <p>제134조 (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u>지체없이</u>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p> <p>②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p> <p>제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p>	<p>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u>기간 안에</u>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p> <p>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u>이름</u>·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u>제시</u>해야 한다.</p> <p>제131조 (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u>바로</u> 조사·<u>보고</u>해야 한다.<개정 1991.5.31></p> <p>②제1항의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및 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p> <p>제132조 (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u>마치기</u>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u>해야 한다</u>.</p> <p>제133조 (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u>이름</u>·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u>해야 한다</u>.</p> <p>제134조 (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u>바로</u>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p> <p>②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p> <p>제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p>

<p>제135조 (사직) 헌국회는 행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직전에 제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신설 1997.1.13> ⑥제1항의 보고·서류제출요구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4.6.28]</p>	<p>제135조 (사직) 개국회는 안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직전에 제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신설 1997.1.13> ⑥제1항의 보고·서류제출요구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4.6.28]</p>
<p>제128조의2 (결산의 제출요구 등) ①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기금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한다. ②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2.4]</p>	<p>제128조의2 (결산의 제출요구 등) ①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기금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한다. ②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끝내야 한다. [본조신설 2003.2.4]</p>
<p>제129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6.28> ③제1항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29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6.28> ③제1항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1장 탄핵소추</p>	<p>제11장 탄핵소추</p>
<p>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 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p>	<p>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 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탄핵소추의 여부를</p>

현 행	개 정 안
<p>②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개정 1991.5.31></p> <p>③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1.5.31></p> <p>제141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1.5.31></p> <p>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제142조 (의결) ①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p> <p>②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p> <p>③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④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p>	<p>②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개정 1991.5.31></p> <p>③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1.5.31></p> <p>제141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1.5.31></p> <p>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제142조 (의결) ①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 토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1991.5.31></p> <p>②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p> <p>③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④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p>
<p>제13장 질서와 경호</p>	<p>제13장 질서와 경호</p>
<p>제143조 (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p> <p>제144조 (경위와 경찰관) ①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p> <p>②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p>	<p>제143조 (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p> <p>제144조 (경위와 경찰관) ①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p> <p>②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어 일정한 기간을 정함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p>	<p>어 일정한 기간을 정함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p>
<p>② <u>확약이 있다</u> 칙하 개정 2006.2.2 2는 본인 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p>	<p>② <u>확약이 있다</u> 칙하 개정 2006.2.2 2는 본인이 이름쓰고 도장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p>
<p>제136조 (퇴직) ①의원이 검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임기개시일</u>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u>지체없이</u>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p>	<p>제136조 (퇴직) ①의원이 검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임기시작일</u>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u>바로</u> 국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1994.6.28></p>
<p>제137조 (궐원통지) 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u>이내</u>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37조 (궐원<u>알림</u>) 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 <u>안에</u>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p>
<p>제138조 (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u>연서로</u>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제138조 (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u>줄서명</u>으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제139조 (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①의장은 제138조의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1991.5.31>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제139조 (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①의장은 제138조의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1991.5.31>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제140조 (답변서의 위원회심사)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1991.5.31></p>	<p>제140조 (답변서의 위원회심사)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1991.5.31></p>

현 행	개 정 안
<p>④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전문개정 2005.7.28]</p>	<p>④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국회규칙에서 정한다.</u> [전문개정 2005.7.28]</p>
<p>제149조의2 (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u>안</u> <u>니하기로</u>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u>자는</u>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u>하여서는 아니 된다.</u> [본조신설 2005.7.28]</p>	<p>제149조의2 (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u>않</u> <u>기로</u>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u>사람은</u>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u>해서는 안된다.</u> [본조신설 2005.7.28]</p>
<p>제150조 (현행범인의 체포)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다만, 의원은 회의장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u>인</u> <u>를</u> 체포할 수 없다. <개정 2006.2.21></p>	<p>제150조 (현행범인의 체포)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다만, 의원은 회의장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u>체</u> <u>포될</u> 수 없다. <개정 2006.2.21></p>
<p>제151조 (회의장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u>자와</u> 의장이 허가한 <u>자</u>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p>	<p>제151조 (회의장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u>사람과</u> 의장이 허가한 <u>사람</u>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p>
<p>제152조 (방청의 허가) ①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152조 (방청의 허가) ①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153조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흥기를 휴대한 <u>자</u>, 주기가 있는 <u>자</u>, 정신에 이상이 있는 <u>자</u>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u>자는</u> 방청을 허가하지 <u>아니한다.</u>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53조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흥기를 휴대한 <u>사람</u>, 주기가 있는 <u>사람</u>, 정신에 이상이 있는 <u>사람</u>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u>사람은</u> 방청을 허가하지 <u>않는다.</u>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개정 2006.2.21> 현	<개정 2006.2.21> 정 안
<p>제154조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의 ③의원의 제안된 질서를 방해하는 위원 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건물 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개정 2006.2.21></p>	<p>제154조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의 ③의원의 제안된 질서를 방해하는 위원 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건물안 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밖 에서 경호한다. <개정 2006.2.21></p>
<p>제145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이 본회 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 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 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 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 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 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 할 수 있다.</p>	<p>제145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이 본회 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 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 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 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 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 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 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 를 선포할 수 있다.</p>
<p>제146조 (모욕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 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p>	<p>제146조 (모욕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 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p>
<p>제147조 (발언방해등의 금지) 의원은 폭력 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 는 소란한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 언을 방해할 수 없다.</p>	<p>제147조 (발언방해등의 금지) 의원은 폭력 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p>
<p>제148조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 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5.7.28]</p>	<p>제148조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 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 건 또는 음식물을 들여와서는 안된다. [전문개정 2005.7.28]</p>
<p>제149조 (국회에 의한 방송) ①국회는 방 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 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 법활동 등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 야 하며,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대 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를 위하여 국회방 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p>	<p>제149조 (국회에 의한 방송) ①국회는 방 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 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 법활동 등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해야 한다. ②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 야 하며,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사 용되어서는 안된다. ③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대 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 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를 위하여 국 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p>

현 행	개 정 안
<p>8.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p> <p>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2회 받았을 때</p> <p>10.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p> <p>11.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p> <p>[전문개정 1991.5.31]</p>	<p>8.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집회일로부터 7일 안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안에 출석하지 않은 때</p> <p>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알림을 2회 받았을 때</p> <p>10.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p> <p>11.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p> <p>[전문개정1991.5.31]</p>
<p>제156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제15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p> <p>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p> <p>③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p> <p>⑤제3항과 제4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p> <p>⑥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를</p>	<p>제156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제15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p> <p>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p> <p>③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④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p> <p>⑤제3항과 제4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p> <p>⑥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p>	<p>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p>
<p>인신퇴장 1994.6.28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②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p>	<p>인신퇴장 1994.6.28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②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장 윤리심사와 징계</p> <p>제155조 (윤리심사 및 징계)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개정 1994.6.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법 제46조제1항(청렴의 의무) 및 제3항(이권운동의 금지), 이 법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2항에 위반하여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한 때 3. 제102조(의제의 발언의 금지) 및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계 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제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공개회의 내용을 공표한 때 6.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상의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7.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장 윤리심사와 징계</p> <p>제155조 (윤리심사 및 징계)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개정 1994.6.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법 제46조제1항(청렴의 의무) 및 제3항(이권운동의 금지), 이 법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2항을 위반하여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한 때 3. 제102조(의제의 발언의 금지) 및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계 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제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공개회의 내용을 공표한 때 6.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7.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현행	개정안
<p>제159조 (심문)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p>	<p>제159조 (심문)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p>
<p>제160조 (변명)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7.28]</p>	<p>제160조 (변명)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7.28]</p>
<p>제161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특례)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u>하지 아니하고</u>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p>	<p>제161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특례)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u>하지 않고</u>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p>
<p>제162조 (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 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u>지체없이</u>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u>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u>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u>하지 아니하기로</u> 의결(제16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u>지체없이</u>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5.31]</p>	<p>제162조 (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 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u>바로</u>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u>바로 본회의 토의에 부쳐서</u>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u>하지 않기로</u> 의결(제16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u>바로</u>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5.31]</p>
<p>제163조 (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5.31>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p>	<p>제163조 (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5.31>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p>3. 30일 이내의 출석정중. 이 경우 출석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등</p>	<p>3. 30일 이내의 출석정중. 이 경우 출석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등</p>
<p>⑦에관한법률의 제6항에 위항에달함</p>	<p>⑦에관한법률의 제6항제1항의한구상제 및 불</p>
<p>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개정 1994.6.28> [전문개정 1991.5.31]</p>	<p>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개정 1994.6.28> [전문개정 1991.5.31]</p>
<p>제157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등) ①제15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p>	<p>제157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등) ①제15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안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p>
<p>②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의 집회일부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4.6.28, 2005.7.28></p>	<p>②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의 집회일부부터 3일 안에 해야 한다. <개정 1994.6.28, 2005.7.28></p>
<p>③윤리특별위원회는 제15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회부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월의 범위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전문개정 1991.5.31]</p>	<p>③윤리특별위원회는 제15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회부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는 날부터 3월 안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안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월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전문개정 1991.5.31]</p>
<p>제158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의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6.28> [전문개정 1991.5.31]</p>	<p>제158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의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4.6.28> [전문개정 1991.5.31]</p>

현 행	개 정 안
<p>의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u>당해연도</u>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u>작성한다</u>.</p> <p><개정 2005.7.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u>그렇지 아니하다</u>.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주)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p>[전문개정 2000.2.16]</p> <p>제 5 조의3 (법률안제출계획의 <u>통지</u>)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u>당해연도</u>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u>통지하여야 한다</u>.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u>통지하여야 한다</u>.</p> <p>[본조신설 2000.2.16]</p> <p>제 6 조 (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0.2.16></p>	<p>의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u>해당연도</u>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u>작성된다</u>.</p> <p><개정 2005.7.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주)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p>[전문개정 2000.2.16]</p> <p>제 5 조의3 (법률안제출계획의 <u>알림</u>)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u>해당연도</u>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u>알려야 한다</u>.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u>알려야 한다</u>.</p> <p>[본조신설 2000.2.16]</p> <p>제 6 조 (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0.2.16></p>

【부록】 국회법 순화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p> <p>4. 제 명</p> <p>②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p> <p>③제명이 의결되지 <u>아니한 때에는</u>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p> <p>④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p> <p>[본조신설 1991.5.31]</p> <p>제164조 (제명된 자의 입후보제한)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결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개정 1991.5.31></p> <p>[본조신설 1991.5.31]</p> <p style="text-align: center;">제15장 보 칙</p> <p>제165조 (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p> <p>[본조신설 1991.5.31]</p> <p>제166조 (규칙제정) ①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u>아니하는</u>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p> <p>②위원회는 이 법 및 제1항의 규칙에 저촉되지 <u>아니하는</u> 범위 안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7.28></p> <p>[본조신설 1991.5.31]</p> <p>제 5 조의2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 ①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p>	<p>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p> <p>4. 제 명</p> <p>②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p> <p>③제명이 의결되지 <u>않은 때에는</u>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p> <p>④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p> <p>[본조신설 1991.5.31]</p> <p>제164조 (제명된 <u>사람의</u> 입후보제한)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 제명된 <u>사람은</u> 그로 인하여 결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개정 1991.5.31></p> <p>[본조신설 1991.5.31]</p> <p style="text-align: center;">제15장 보 칙</p> <p>제165조 (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p> <p>[본조신설 1991.5.31]</p> <p>제166조 (규칙제정) ①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u>않는</u>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p> <p>②위원회는 이 법 및 제1항의 규칙에 저촉되지 <u>않는</u> 범위 안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7.28></p> <p>[본조신설 1991.5.31]</p> <p>제 5 조의2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 ①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p>

【부록】 국회도서관법 순화조문대비표

현행조문	순화조문
<p>第1條 (目的) 이 법은 國會圖書館(이하 “圖書館”이라 한다)의 組織과 職務 기타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職務) ①圖書館은 圖書館資料 및 文獻情報의 蒐集·정리·보존·제공과 參考回答 등의 圖書館奉仕를 行함으로써 國會의 立法活動을 지원한다. ②圖書館은 電子圖書館構築 및 운영에 관한 事務를 처리한다. ③圖書館은 第1項의 職務遂行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國會 이외의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 教育·研究機關 및 公衆에 대하여 圖書館奉仕를 제공할 수 있다. ④圖書館은 圖書館事務에 관한 監查業務 기타 議長이 지정하는 事務를 처리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圖書館奉仕의 대상과 내용은 規則으로 정한다.</p> <p>第3條 (公務員의 任用) ①圖書館에 國會圖書館長(이하 “館長”이라 한다) 이외에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②5級이상의 公務員은 議長이 任免하고, 기타의 公務員은 館長이 任免한다. 다만, 議長은 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任用權의 일부를 館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p> <p>第4條 (館長) ①館長은 議長이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任免한다. ②館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 ③館長은 議長의 監督을 받아 圖書館事務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다만, 圖書館關聯事務중 人事行政·예산회계·국고금관리·國有財産管理·物品管理·非常計劃業務·公職者財産登錄業務등에 관하여 國會</p>	<p>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직무)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과 참고답변 등의 도서관 ∨ 봉사로서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②도서관은 전자도서관 ∨ 구축(構築)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도서관은 제1항의 직무수행이 방해받지 않는 범위 ∨ 안에서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교육·연구기관 및 일반인에게 도서관 ∨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④도서관은 도서관 ∨ 사무에 관한 감사업무, 그 밖에 의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⑤제3항에 따른 도서관 ∨ 봉사의 대상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 (공무원의 임용) ①도서관에 국회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5급 ∨ 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4조 (관장) ①의장은 관장을 국회 ∨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②관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관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도서관 사무 전반을 관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도서관 ∨ 관련사무 ∨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고금 ∨ 관리·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업무·공직자 ∨ 재산등록 ∨ 업무 ∨</p>

【부록】 국회도서관법 순화조문대비표

<p>事務處法·國家公務員法·예산회계법·국고금관리법·國有財産法 기타 다른 法令에서 國會事務處 또는 國會事務總長의 權限에 속하는 事務로 規定된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등은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예산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 <u>그 밖의 법령에서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된 것은 예외로 한다.</u></p>
<p>第5條 (組織) ①圖書館의 補助機關은 室長·局長 및 課長으로 한다. ②館長 및 室長·局長을 직접 補佐하기 위하여 그 밑에 擔當官을 둘 수 있으며, 館長밑에 局에 속하지 <u>아니하는</u> 課 1 개를 둘 수 있다. ③室長은 1級 또는 2級, 局長은 2級 또는 3級, 課長은 3級 또는 4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고, 擔當官은 2級 내지 4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2級상당 내지 4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다만, 3級이상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는 職位(課長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位를 제외한다)중 그 所管業務의 성질상 専門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定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規則으로 定하는 職位에 대하여 契約職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다. ④圖書館에 두는 公務員의 定員, 室·局·課 및 擔當官의 설치 及 事務分掌 기타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定한다. 但만, 課 및 이에 상당하는 擔當官의 설치 及 事務分掌은 館長이 이를 定할 수 있다.</p>	<p>제5조 (조직) ①도서관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②관장 및 실장·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관장 아래에 국에 속하지 않는 과 1 개를 둘 수 있다. 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2급 상당부터 4급 상당까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3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 중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나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나눔은 관장이 정할 수 있다.</p>
<p>第6條 (電子圖書館構築을 위한 資料의 蒐集) 館長은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圖書館構築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資料의 蒐集을 위하여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 및 教育·研究機關의 長에게 資料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資料의 제공을 요청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요청받은 資料중 刊行物에 대하여는 그 刊行物의 내용이 입력된 디스켓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p>	<p>제6조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자료의 수집) 관장은 제2조 제2항에 따른 전자도서관 구축을 추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 중 간행물은 내용이 입력된 전자파일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p>

<p>第7條 (資料의 제공 및 納本) ①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 및 教育·研究機關이 圖書·連續刊行物·멀티미디어資料 기타 規則이 정하는 立法情報支援이나 國際交換에 필요한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10部를 圖書館에 제공하여야 한다.</p> <p>②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 및 教育·研究機關 이외의 자가 圖書·連續刊行物·멀티미디어資料 기타 規則이 정하는 立法情報支援에 필요한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圖書館에 納本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圖書館은 納本한 者에게 그 資料에 대한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p> <p>③館長은 資料의 제공 및 納本의 實效를 거두기 위하여 關係國家機關·公共團體 및 教育·研究機關의 長에게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納本의 節次·補償 기타 必要한 사항은 規則으로 定한다.</p> <p>第8條 (寄贈) 館長은 圖書館에 物品 또는 金錢의 寄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받을 수 있다.</p> <p>第9條 (圖書館資料의 相互交換·移管 및 폐기) ①館長은 所藏資料중 圖書館資料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資料가 있을 경우 이를 다른 圖書館·國家機關·公共團體와 相互交換하거나 移管할 수 있다.</p> <p>②館長은 所藏資料중 利用價値가 상실되거나 汚損된 資料가 있을 경우 이를 폐기 또는 除籍할 수 있다.</p> <p>③제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相互交換·移管 및 폐기의 基準과 범위에 관하여 必要한 사항은 規則으로 定한다.</p> <p>第10條 (國會圖書館發展諮問委員會) ①圖書館의 발전과 圖書館機能의 효율적인</p>	<p>제7조 (자료의 제공 및 납본)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이 도서·연속간행물·멀티미디어자료 등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하면,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10부를 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p> <p>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 및 교육·연구기관 이외의 자가 도서·연속간행물·멀티미디어자료 등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하면,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納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p> <p>③관장은 자료의 제공 및 납본의 실효(實效)를 거두기 위하여 관계(關係)국가기관·공공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납본의 절차·보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 (기증) 관장은 도서관에 물품 또는 금전의 기증(寄贈)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p> <p>제9조 (도서관자료의 상호(相互)교환·이동 및 폐기) ①관장은 소장자료(所藏資料)중 도서관자료로서 적합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다른 도서관·국가기관·공공단체와 상호(相互)교환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p> <p>②관장은 소장자료(所藏資料)중 이용가치가 없거나, 더럽고 부서진 자료가 있으면, 폐기 또는 제적(除籍)할 수 있다.</p> <p>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호교환·이동 및 폐기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①도서관의 발전과 도서관(圖書館)기능의 효율적</p>
--	--

【부록】 국회도서관법 순화조문대비표

<p>수행을 위한 重要施策의 수립 및 電子圖書館構築 등에 관한 館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館長 소속하에 國會圖書館發展諮問委員會를 둘 수 있다.</p> <p>②國會圖書館發展諮問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정한다.</p> <p>第11條 (時差制 근무) 館長은 國會의 會期中 其他 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第12條 (委任規定) 이 法에서 規則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議長이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이를 정한다.</p>	<p>인 수행을 위한 重要施策의 수립 및 전자도서관∨건축 등에 관한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장 소속∨안래에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1조 (시차제 근무) 관장은 국회의 회기∨중, 그 밖의 규정(規程)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시킬 수 있다.</p> <p>제12조 (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p>
--	--

【부록】 국회 사무처법 순화조문대비표

현행조문	순화조문
<p style="text-align: center;">第1章 總則</p> <p>第1條 (目的) 이 법은 國會事務處(이하 “事務處”라 한다)의 組織과 職務 기타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職務) 事務處는 議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國會 및 國會議員의 立法活動과 國會의 行政業務에 관련된 다음 各號의 事務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法律案, 請願등의 접수·처리 2. 國會의 法案審査, 豫算決算審査, 國政監査 및 調査, 國家政策評價등의 지원 3. 國會의 本會議 및 委員會會議에 관한 지원 4. 國會議員의 議政活動支援 5. 國會의 議事中繼放送 및 弘報 6. 國會의 議員外交活動支援 7. 國會所屬公務員에 대한 教育訓練과 議會制度 및 운영에 관한 研修 8. 國會의 廳舍管理·警備 및 厚生 9. 國會의 職場民防衛隊 및 職場豫備軍의 편성·운영과 非常對備業務 10. 國家公務員法·豫算會計法·國有財産法 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處 또는 事務總長의 權限에 속하는 사항 11. 監査業務 기타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p>第3條 (公務員의 任用) ①事務處에 事務總長 이외에 次長 2人과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p> <p>② 5級이상의 公務員은 議長이 任免하고 기타의 公務員은 事務總長이 任免한다. 다만, 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議長은 事務總長에게 그 任用權의 一部를 委任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직무)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안, 청원∨등의 접수·처리 2.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국가정책평가∨등의 지원 3.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지원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5.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6.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7. 국회∨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8. 국회의 청사관리·경비 및 후생 9.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 10. 「국가공무원법」·「예산회계법」·「국유재산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감사업무,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여 지정하는 사항 <p>제3조 (공무원의 임용) ①사무처는 사무총장과 차장 2인 및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p> <p>② 5급∨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규칙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p>

【부록】 국회 사무처법 순화조문대비표

<p>③議長은 國會機關相互間에 人事交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人事交流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人事交流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事務總長은 立法支援活動에 필요한 專門人力을 보장하기 위하여 契約職公務員을 둘 수 있다.</p>	<p>③의장은 국회기관∨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으면,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사무총장은 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p>
<p>第 2 章 事務處</p>	<p>제 2 장 사무처</p>
<p>第 4 條 (事務總長) ①事務總長은 議長의 監督을 받아 國會의 事務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②事務總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國務委員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 ③議長이 行한 처분에 對한 行政訴訟의 被告는 事務總長으로 한다.</p>	<p>제 4 조 (사무총장) ①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 전반을 관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의장의 처분에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p>
<p>第 5 條 (次長) ①次長은 立法次長·事務次長으로 하며 事務總長의 提請으로 議長이 任免한다. ②次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 ③次長은 事務總長을 補佐하여 事務處의 事務를 分掌處理하며, 事務總長의 事故가 있을 때에는 立法次長·事務次長의 順序로 그 職務를 代理한다. ④立法次長은 立法補助業務와 委員會業務支援 및 이에 따른 調整을 함에 있어 事務總長을 보좌한다. ⑤事務次長은 行政管理業務에 있어 事務總長을 보좌한다.</p>	<p>제 5 조(차장) ①차장은 입법차장·사무차장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②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사무를 나누어 처리하며, 사무총장에게 사고가 생기면 입법차장·사무차장의 순서로 직무를 대리한다. ④입법차장은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지원 및 조정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⑤사무차장은 행정관리업무로 사무총장을 보좌한다.</p>
<p>第 6 條 (議長秘書室) ①議長의 秘書業務와 기타 이에 關連된 事項에 關한 業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議長秘書室을 둔다. ②議長秘書室에 秘書室長 1 人을 두되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 ③秘書室長은 議長의 命을 받아 室務를 管掌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p>	<p>제 6 조 (의장비서실) ①의장의 비서업무와 그 밖에 關連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②의장비서실은 비서실장 1 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비서실장은 의장의 명령을 받아 실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第 7 條 (組織) ①事務處의 補助機關은 次長·室長·局長 및 課長으로 한다. 다</p>	<p>제 7 조 (조직) ①사무처의 보조기관은 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p>

<p>만, 所管業務의 특성상 室長·局長 또는 課長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補助機關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補助機關은 이 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室長·局長 또는 課長으로 본다.</p> <p>②事務總長, 次長·室長 및 局長을 直接 補佐하기 위하여 그 밑에 擔當官을 둘 수 있으며 事務次長 밑에 局에 속하지 아니하는 課를 둘 수 있다.</p> <p>③室長은 1級 또는 2級, 局長은 2級 또는 3級, 課長은 3級 또는 4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각각 補하고, 擔當官은 2級 내지 4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2級상당 내지 4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p> <p>④第3項 및 第8條第3項·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3級이상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는 職位(課長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位를 제외한다)중 그 所管業務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定員의 100分의 20의 범위안에서 規則으로 정하는 職位에 대하여 契約職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다.</p> <p>⑤事務處 및 委員會에 두는 公務員의 定員, 室·局·課 및 擔當官의 설치 및 事務分掌 기타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정한다. 다만, 課 및 이에 상당하는 擔當官(委員會의 立法調査官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事務分掌은 事務總長이 이를 정할 수 있다.</p>	<p>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실장·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으면, 규칙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실장·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p> <p>②사무총장, 차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무차장 아래에 국에 속하지 않는 과를 둘 수 있다.</p> <p>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2급 상당부터 4급 상당까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④제 3 항 및 제 8 조 제 3 항·제 4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중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면,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p> <p>⑤사무처 및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나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사무나눔은 사무총장이 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 3 章 委員會에 두는 公務員</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p>
<p>第 8 條 (委員會의 公務員) ①委員會에 首席專門委員 1 人을 포함한 專門委員과 立法審議官·立法調査官 기타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다만, 特別委員會의 首席專門委員과 委員會의 立法審議官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p>	<p>제 8 조 (위원회의 공무원) ①위원회에 수석 전문위원 1 인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하여야만 둘 수 있다.</p>

【부록】 국회 사무처법 순화조문대비표

<p>②首席專門委員은 別定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補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p> <p>③首席專門委員의의 專門委員은 2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p> <p>④立法審議官은 2級 또는 3級, 立法調査官은 3級 내지 5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각각 補한다.</p> <p>⑤議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專門委員과 필요한 公務員을 特別委員會에 兼職勤務하게 할 수 있다.</p> <p>⑥專門委員의 任用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정한다.</p> <p>第9條 (專門委員의 職務) ①首席專門委員은 所屬委員會委員長의 指揮를 받아 그 業務를 처리하며, <u>그</u> 委員會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p> <p>②專門委員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法律案, 豫算案, 請願등 所管案件에 대한 檢討報告 2. 各種 議案을 비롯한 所관사항에 관한 資料의 蒐集·調査·研究 및 所屬委員會에 대한 제공 3. 委員會에서의 各種 質疑시 所屬委員에 대한 質疑資料의 제공 4. 議事進行의 보좌 5. 기타 所屬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第4章 補則</p>	<p>②수석∨전문위원은 別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보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p> <p>③수석∨전문위원 아닌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④입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p> <p>⑤의장은 필요하면 전문위원과 필요한 公務員을 特別위원회에 겸직으로 근무시킬 수 있다.</p> <p>⑥전문위원의 임용자격, <u>그</u>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 (전문위원의 직무) ①수석∨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②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게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를 할 때, 소속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 4. 의사진행의 보좌 5. <u>그</u> 밖에 소속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第10條 (法人의 設立) ①議長은 國會와 관련된 研究·調査, 研修, 國會議員 및 國會公務員에 대한 厚生福祉增進, 國會의 議事中繼放送 기타 國會活動의 지원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을 設立하게 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의 任員의 選任 및 事業計劃에 관하여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議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議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p>	<p>제10조 (법인의 설립) ①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의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u>그</u> 밖에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임원∨선임 및 사업계획은 정관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p>

<p>立된 法人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出捐金 또는 補助金을 交付할 수 있다.</p> <p>④事務總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에 대하여 그 所屬公務員을 派遣할 수 있다.</p> <p>⑤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에 대하여 國·公有財産을 그 용도에 支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無償으로 貸付·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p> <p>第11條 (時差制 勤務) 事務總長은 國會의 會期中에 한하여 業務의 事情에 따라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勤務時間을 變更하여 勤務하게 할 수 있다.</p> <p>第12條 (權限의 委任) 國家公務員法·豫算會計法·國有財産法·物品管理法 기타 法令의 規定에 의한 事務處 또는 事務總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規則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國會圖書館 또는 國會도서관장이나 國會예산정책처 또는 國會예산정책처장에게 委任할 수 있다.</p> <p>第13條 (施行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한다.</p> <p>第14條 (委任規定) 國家公務員法에서 國會規則으로 定하도록 委任된 事項과 이 法에서 規則으로 定하도록 委任된 事項은 議長이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이를 定한다.</p>	<p>에게 豫算의 범위안에서 기부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p> <p>④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서 設立된 법인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서 設立된 법인에게 國·공유재산을 용도에 방해받지 않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p> <p>제11조 (시차제 근무) 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안중이면,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시킬 수 있다.</p> <p>제12조 (권한의 위임) 「국가공무원법」·「예산회계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규칙에 따라서 국회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13조 (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 (위임규정) 「국가공무원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이 법에서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p>
---	--

【부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순화조문대비표

현행조문	순화조문
<p>第1條 (目的) 이 법은 <u>國會에서의 案件 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書類提出의 요구,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를 規定 함을 目的으로 한다.</u></p>	<p>제1조 (목적) 이 법은 <u>국회에서 안전심 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 한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청, 증언·감 정 V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u></p>
<p>第2條 (證人出席등의 義務) <u>國會에서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하여 보고와 書類提出의 요구를 받거나, 證人·參考人으로서의 출석이 나 鑑定の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누 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제2조 (증인출석 V등의 의무) <u>국회에서 안전심 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청을 받거나, 증인·참고인 으로 출석이나 감 정의 요청을 받으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응하여야 한 다.</u></p>
<p>第3條 (證言등의 거부) ① <u>證人은 刑事訴 訟法 第148條 또는 第149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 宣誓·證言 또는 書 類提出을 거부할 수 있다.</u> ② <u>鑑定人은 刑事訴訟法 第148條에 해당 하는 경우에 宣誓 또는 鑑定을 거부 할 수 있다.</u> ③ <u>第1項 및 第2項의 거부이유는 소 명하여야 한다.</u> ④ <u>16歲미만의 者나 宣誓의 취지를 이 해하지 못하는 者는 宣誓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u></p>	<p>제3조 (증언 V등의 거부) ① <u>증인은 형사 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 하면,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 부할 수 있다.</u> ② <u>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 하면,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u> ③ <u>제1항과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 하여야 한다.</u> ④ <u>16세 V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않는다.</u></p>
<p>第4條 (公務上 秘密에 관한 證言·書類 의 제출) ① <u>國會로부터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證言의 요구를 받거나, 國家機關이 書類提出을 요구받은 경우에 證言할 사실이나 제출할 書類 의 내용이 職務上 秘密에 속한다는 이 유로 證言이나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軍事·外交·對北關係의 國家機密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 로 말미암아 國家安危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친다는 主務部長官(大統領 및 國務總理의 所屬機關에서는 당해 官署의</u></p>	<p>제4조 (공무상 비밀의 증언과 서류의 제 출) ① <u>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청을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청받으면, 증 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 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사항으 로써 발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친다는 주무부 V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 의 장)의 소명이 증언 V등의 요청을 받</u></p>

<p>長)의 소명이 <u>證言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日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國會가 第1項 但書의 소명을 수락하지 <u>아니할 경우에는</u> 本會議의 議決로, 閉會중에는 該當委員會의 議決로國會가 <u>요구한 證言 또는 書類의 제출이 國家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國務總理의 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u></p> <p>③國務總理가 第2項의 聲明의 <u>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日이내에 그 聲明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u> 證言이나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없다.</p> <p>第5條 (證人등의 출석요구등)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書類提出의 <u>요구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u> 本會議의 경우에는 議長이, 委員會의 경우에는 委員長이 該當者나 機關의 長에게 要求書를 발부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u>요구할 수 있다.</u></p> <p>③第1項의 要求書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書類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이 출석할 日時 및 場所와 요구에 응하지 <u>아니하는</u> 경우의 法律上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證人과 參考人의 경우에는 訊問할 요지를 <u>첨부하여야 한다.</u></p> <p>④第1項의 要求書는 늦어도 보고 또는 書類提出의 要求日이나 證人등의 出席要求日 7日전에 송달되어야 한다.</p> <p>⑤第1項의 要求書의 송달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の 송달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p> <p>⑥출석을 <u>요구받은</u> 證人 또는 參考人</p>	<p>은 날로부터 5일 <u>안</u>에 있으면 예외로 한다.</p> <p>②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u>않으면</u>,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 <u>중</u>에는 해당 <u>위원회</u>의 의결로 국회가 <u>요청한</u>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u>요청</u>할 수 있다.</p> <p>③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의 <u>요청</u>을 받은 날로부터 7일 <u>안</u>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않으면,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p> <p>제5조 (증인 <u>등</u>의 출석요청 <u>등</u>)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 제출의 요청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청을 하면, 본회의는 의장, 위원회는 위원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u>요청서</u>를 발부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u>요청</u>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u>요청서</u>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u>요청</u>에 응하지 <u>않을</u> 경우의 법률상 제재의 사항을 기록하고, 증인과 참고인은 신문할 요지를 <u>붙여야</u> 한다.</p> <p>④제1항의 <u>요청서</u>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u>요청일</u>이나 증인 <u>등</u>의 출석요청일 7일 <u>전</u>에 송달되어야 한다.</p> <p>⑤제1항의 <u>요청서</u>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송달규정에 따른다.</p> <p>⑥출석을 <u>요청받은</u> 증인 또는 참고인</p>
---	--

<p>은 사전에 <u>訊問할 요지에 대한 答辯書</u>를 제출할 수 있다.</p> <p>第6條 (證인에 대한 同行命令) ①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한 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證인이 正當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u>아니하는 때에는 그 議決</u>로 해당 證인에 대하여 指定한 場所까지 同行할 것을 命令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同行命令을 合에는 委員會의 委員長이 同行命令狀을 발부한다.</p> <p>③第2項의 同行命令狀에는 해당 證인의 姓名·住居, 同行命令을 하는 이유, 同行할 場所, 發付年月日, 그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 경과하면 執行하지 못하며 同行命令狀을 <u>반환하여야</u> 한다는 취지와 同行命令을 받고 거부하면 處罰된다는 취지를 <u> 기재하고</u> 委員長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해당 證인의 姓名이 分明하지 <u>아니하는 때에는</u> 인상·체격 <u>기타</u> 해당 證人을 特定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住居가 分明하지 <u>아니한 때에는</u> 住居記載를 생략할 수 있다.</p> <p>④同行命令狀의 執行은 同行命令狀을 해당 證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p> <p>⑤同行命令狀은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執行하도록 한다.</p> <p>⑥矯導所 또는 拘置所(軍矯導所 또는 軍拘置所를 포함한다)에 收監중인 證인에 대한 同行命令狀의 執行은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의 委任에 의하여 矯導官吏가 행한다.</p> <p>⑦現役軍人인 證인이 營內에 있을 때에는 所屬部隊長은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의 同行命令狀 執行에 協力할 義務가 있다.</p> <p>第7條 (證인·鑑定人의 宣誓) ①議長 또는 委員長(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의 小委員長 또는 班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證人·鑑定인에게 證言·鑑定을 <u>요구할 때에는 宣誓하게 하여야</u> 한다.</p> <p>②참고인으로 출석한 者가 證人으로서</p>	<p>은 사전에 <u>신문할 요지의 답변서</u>를 제출할 수 있다.</p> <p>제6조 (증인의 同行명령) ①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正當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u>않으면</u>,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指定한 장소까지 同行할 것을 命令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同行명령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同行명령장을 발부한다.</p> <p>③제2항의 同行명령장은 해당 증인의 姓名·주거, 同行명령을 하는 이유, 同行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u>지나면</u> 집행하지 못하며, <u>同行명령장을 돌려주어야</u> 한다는 취지와 同行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u>기록하고</u>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해당 증인의 姓名이 分明하지 <u>않으면</u>, 인상·체격 등 해당 증인을 特定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u>주거가 分明하지 않으면</u>, 주거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p> <p>④同行명령장의 집행은 同行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p> <p>⑤同行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게 집행하도록 한다.</p> <p>⑥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증인의 <u>同行명령장</u>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위임으로 교도관리가 행한다.</p> <p>⑦현역군인인 증인이 영내에 <u>있으면</u> 소속부대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同行명령장 집행에 協力할 義務가 있다.</p> <p>제7조 (증인·감정인의 宣誓) ①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u>요청하려면 宣誓시켜야</u> 한다.</p> <p>②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p>
--	---

【부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순화조문대비표

<p>宣誓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證人으로 訊問할 수 있다.</p> <p>③宣誓하기 전에 證言·鑑定을 요청한 議長 또는 委員長은 宣誓의 취지를 명시하고 僞證 또는 虛僞鑑定의 罰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p> <p>第8條 (宣誓의 方式) 宣誓의 方式에 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157條 또는 第17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p>第9條 (證人의 보호) ①國會에서 證言하는 證人은 辯護士인 辯護人을 帶同할 수 있다. 이 경우 辯護人은 그 資格을 證明하는 書面을 제출하고, 證人에 대하여 憲法 및 法律上의 權利에 관하여 助言할 수 있다.</p> <p>②國會에서 證言하는 證人·參考人이 中繼放送 또는 寫眞報道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意思를 表明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會議의 非公開를 要求할 때에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로 中繼放送 또는 錄音·錄畫·寫眞報道를 금지시키거나 會議의 일부 또는 전부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國會에서 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 調査받은 者는 이 法에서 정한 處罰을 받는 외에 그 證言·鑑定·陳述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處分도 받지 아니한다.</p> <p>④國會가 監査 또는 調査時 작성한 書類 또는 錄取한 錄音테이프 등은 이를 外部에 公表할 수 없다. 다만, 이 法의 위반여부가 搜查 또는 裁判의 대상이 된 경우나 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서 證言·鑑定·陳述을 한 者가 그 寫本을 要求한 때에는 議長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p> <p>第10條 (檢證) ①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檢증을 행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檢證實施通報書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p>	<p>서 선서를 승낙하면 證人으로 신문할 수 있다.</p> <p>③선서∨전에 증언·감정을 요청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은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p> <p>제8조 (선서의 방식) 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 (증인의 보호) ①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게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를 조언할 수 있다.</p> <p>②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등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청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p>③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외에 증언·감정·진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p> <p>④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할 때,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증언·감정·진술을 한 사람이 사본을 요청하면,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p> <p>제10조 (검증) ①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면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의결이 있으면,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알림문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알림문서는</p>
--	--

<p>늦어도 檢證實施日 3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p> <p>③제 2 항의 <u>통보서에는 檢證委員과 檢證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기타 檢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u></p> <p>④國家機關이 第 1 項의 檢證을 거절할 경우에는 第 4 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⑤제 2 항의 <u>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늦어도 檢증실시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p> <p>③제 2 항의 <u>알림문서는 檢증위원과 檢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등 檢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u></p> <p>④국가기관이 제 1 항의 檢증을 거절하면 제 4 조의 <u>규정에 따른다.</u></p> <p>⑤제 2 항의 <u>알림문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송달규정에 따른다.</u></p>
<p>第11條 (旅費·手當의 支給) 이 법의 規定에 의하여 書類의 제출이나 證言·鑑定 또는 陳述을 하기 위하여 國會 또는 기타의 場所에 출석한 者에 대하여는 國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u>旅費·日當·宿泊料를 支給한다.</u></p>	<p>제11조 (여행경비·수당의 지급) <u>국회는 이 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국회규칙에 따라 여행경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한다.</u></p>
<p>第12條 (不出席등의 罪)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u>아니한 證人, 보고 또는 書類 제출요구를 거절한 者, 宣誓 또는 證言이나 鑑定을 거부한 證人이나 鑑定人은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p> <p>②정당한 이유없이 證人·鑑定人·參考人の 출석을 방해하거나 檢證을 방해한 者에 대하여도 第 1 項의 刑과 같다.</p>	<p>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u>않은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청을 거절한 사람,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②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u>검증을 방해한 사람도 제 1 항의 형과 같다.</u></p>
<p>第13條 (國會侮辱의 罪) 證人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출석하여 證言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言行으로 國會의 權威를 훼손한 때 또는 證人이 同行命令을 거부하거나 第 3 者로 하여금 同行命令狀의 執行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제13조 (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u>그 밖에 모욕적인 말과 행동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 3 자에게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시킨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p>
<p>第14條 (偽證등의 罪) ①이 법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 또는 鑑定人이 허위의 陳述이나 鑑定을 한 때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다만, 犯罪가 발각되기 전에 自白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p> <p>②第 1 項의 自白은 國會에서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p>	<p>제14조 (위증 등의 죄) ①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u>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u>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u></p> <p>②제 1 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p>

【부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순화조문대비표

<p>第15條 (告發)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證人·鑑定人등이 第12條·第13條 또는 第14條第1項 本文의 罪를 범하였다 <u>고 인정할 때에는</u> 告發하여야 한다. 다만, 聽聞會의 경우에는 在籍委員 3分の1 이상의 連署에 의하여 그 委員의 이름으로 告發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4條第1項 但書의 自白이 있는 경우에는 告發하지 <u>아니할</u> 수 있다.</p> <p>③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告發은 書類등을 要求하였거나 證人·鑑定人등을 調査한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長 또는 委員長의 名義로 한다.</p> <p>④第1項의 告發이 있는 경우에는 檢事는 告發狀이 접수된 날로부터 2月내에 搜查를 終結하여야 하며, 檢察總長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國會에 書面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第16條 (기간의 起算日) 이 法에 의한 기간의 計算에는 初日을 算入한다.</p> <p>第17條 (國會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p>	<p>제15조 (고발)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속서명으로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p> <p>②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 1 항 단서의 자백이 있으면 고발하지 <u>않을</u> 수 있다.</p> <p>③제 1 항 본문의 <u>고발은</u> 서류∨등을 요청하였거나 증인·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이름으로 한다.</p> <p>④제 1 항의 고발이 있으면,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검찰총장은 즉시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6조 (기간의 시작∨날) 이 법의 기간 계산은 첫째∨날을 포함한다.</p> <p>제17조 (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p>
--	---

【부록】 국회 예산정책처법 순화조문대비표

현행조문	순화조문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지위)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p> <p>제 3 조 (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p>제 4 조 (처장) ①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예산정책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예산정책처 관련사무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예산회계법·국유재산</p>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지위) ①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 아래에 둔다. ②예산정책처의 직무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p> <p>제 3 조 (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뒤따르는 법률안 등 의안의 소요비용 추계의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 주요 사업의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p>제 4 조 (처장) ①국회 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②처장은 사무의 처리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예산정책처의 사무 전반을 관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예산정책처 관련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 재산등록 등은 「국회 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예산회계</p>

【부록】 국회 예산정책처법 순화조문대비표

<p>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 5 조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① 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2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u>자로서</u> 국회의원·국회공무원이 아닌 <u>자로</u> 구성되어야 한다. ③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 5 조 (국회 예산정책처장 추천위원회) ①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2 제 3 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u>요청하려면</u>, 미리 국회 예산정책처장 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u>추천업무를</u>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u>사람으로서</u> 국회의원·국회공무원이 아닌 <u>사람으로</u> 구성되어야 한다. ③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u>필요한 사항</u>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 6 조 (공무원의 임용) 예산정책처의 5 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u>규칙이 정하는 바에</u> 의하여 처장에게 <u>그 임용권의 일부</u>를 위임할 수 있다.</p>	<p>제 6 조 (공무원의 임용) 예산정책처의 5 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u>규칙에 따라</u> 처장에게 <u>임용권의 일부</u>를 위임할 수 있다.</p>
<p>제 7 조 (조직) ①예산정책처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u>규칙이 정하는 바에</u> 의하여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처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u>밑에</u>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u>밑에</u> 실 또는 국에 속하지 <u>아니하는</u> 과 1 개를 둘 수 있다. ③실장은 1 급 또는 2 급, 국장은 2 급 또는 3 급, 과장은 3 급 또는 4 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 급 내지 4 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계약직공무원 또는 2 급상당 내지 4 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⑤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p>	<p>제 7 조 (조직) ①예산정책처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u>규칙에 따라</u>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처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u>아래에</u>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u>아래에</u> 실 또는 국에 속하지 <u>않는</u> 과 1 개를 둘 수 있다. ③실장은 1 급 또는 2 급, 국장은 2 급 또는 3 급, 과장은 3 급 또는 4 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 급부터 4 급까지인 일반직 국가공무원·계약직 공무원 또는 2 급 상당부터 4 급 상당까지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처장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 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⑤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p>

<p>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u>사무분장</u>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u>사무분장은</u> 처장이 정할 수 있다.</p>	<p>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u>사무나눔</u>,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u>사무나눔은</u> 처장이 정할 수 있다.</p>
<p>제 8 조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 제공) <u>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u>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u>요구가 있는 경우에는</u>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 8 조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 제공) <u>처장은 직무를 수행함에</u>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u>요청이 있으면</u>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 9 조 (위원회 보고 등) ①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u>요구에</u>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②<u>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u> 관계행정기관의 위법한 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u>당해</u> 업무의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9 조 (위원회 보고 등) ①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u>요청에</u>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②<u>처장은 직무를 수행함에</u>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한 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u>사항이 있으면</u>, 국회의 <u>해당</u>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0조 (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0조 (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u>요청을</u>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p>
<p>제11조 (위임규정) 이 법에서 <u>규칙으로</u>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p>	<p>제11조 (위임규정) 이 법에서 <u>규칙으로</u>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u>필요한</u> 사항은 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p>

【부록】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순화조문대비표

현행조문	순화조문
<p>第1條 (目的)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國會議員의 職務活動과 品位維持에 필요한 最小限의 實費를 補填하기 위한 手當등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第2條 (手當의 支給基準) 國會議員에게 別表 1의 手當을 每月 支給한다. 다만, 手當을 調整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改正될 때까지 公務員報酬의 調整比率에 따라 國會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2조 (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 대해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려면,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로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第3條 (手當의 支給日) 國會議員의 手當은 每月 20일에 支給한다. 다만, 支給하는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前日로 한다.</p>	<p>제3조 (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이면 전일로 한다.</p>
<p>제4조 (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p>	<p>제4조 (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2조에 따른 수당중 그 월에 재직된 날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p>
<p>第5條 (兼職議員의 手當) 國會議員이 法律이 許容하는 다른 公務員의 職을 兼할 때에는 國會議員의 手當과 兼職의 報酬중 많은 것을 支給받는다.</p>	<p>제5조 (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하면,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p>
<p>第6條 (立法活動費) ①國會議員의 立法基礎資料의 蒐集·研究등 立法活動을 위하여 別表 2의 立法活動費를 每月 支給한다. 다만, 立法活動費를 調整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改正될 때까지 國會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②立法活動費의 支給日 및 計算方法에 관하여는 第3條 및 第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p>제6조 (입법활동비) ①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등 입법 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려면,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p>
<p>第7條 (特別活動費) ①國會議員의 會期中 立法活動을 특히 支援하기 위하여 特別活動費를 支給한다. ②特別活動費는 別表 3에 의한 支給額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額에 會期日</p>	<p>제7조 (특별활동비) ①국회의원의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따른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p>

【부록】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순화조문대비표

<p>數를 곱하여 算出하고 會期中에 支給한다.</p> <p>제 7 조의 2 (입법 및 정책개발비) ①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p> <p>第 8 條 (旅費) ①國會議員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國會議長의 命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할 때에는 旅費를 支給한다. ②旅費의 支給基準은 國會規則로 정한다. ③國外旅費는 旅行目的을 考慮하여 國外公式活動에 필요한 最小限度의 범위 안에서 支給한다.</p> <p>第 9 條 (補助職員) ①國會議員의 立法活動을 支援하기 위하여 補佐官등 補助職員을 둔다. ②補助職員에 대하여는 別表 4 에 정한 定員의 범위안에서 報酬를 支給한다.</p> <p>第10條 (傷害·死亡) 國會議員이 職務로 인하여 身體에 傷害를 입은 때에는 그 治療費의 全額을 支給하고, 그 傷害로 不具가 된 때에는 手當의 6月分相當額을, 그 傷害 또는 職務로 인한 疾病으로 死亡한 때에는 手當의 1年分相當額을 支給한다.</p> <p>第11條 삭제</p>	<p>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 중에 지급한다.</p> <p>제 7 조의 2 (입법 및 정책개발비) ①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 1 항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 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p> <p>제 8 조 (여행경비) ①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령으로 공무여행을 하면 여행경비를 지급한다. ②여행경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③국외 ∨ 여행경비는 여행목적을 생각하여 국외 ∨ 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 안에서 지급한다.</p> <p>제 9 조 (보조직원) ①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 등 보조직원을 둔다. ②보조직원은 별표 4 에 정한 정원의 범위 ∨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p> <p>제10조 (상해·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신체에 상해를 입으면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불구가 되면 수당의 6개월분 ∨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하면 수당의 1년분 ∨ 상당액을 지급한다.</p> <p>제11조 삭제</p>
---	--

【부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순화조문대비표

현행조문	순화조문
<p>第1條 (目的) 이 법은 國政監査(이하 “監査”라 한다)와 國政調査(이하 “調査”라 한다)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監査) ①國회는 國政全般에 관하여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日間 監査를 행한다. 다만, 本會議의 議決에 의하여 그 時期를 變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國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는 정기회 기간 중 별도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監査는 常任委員長이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작성한 監査計劃書에 의하여 행한다. 國會運營委員會는 常任委員會間에 監査對象機關이나 監査日程의 중복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調整할 수 있다. ④제3항의 監査計劃書에는 監査班의 編成·監査日程·監査要領등 監査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第3條 (調査) ①國회는 在籍議員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特別委員會 또는 常任委員會로 하여금 國政의 特定事案에 관하여 調査를 시행하게 한다. ②第1項의 調査要求는 調査의 目的, 調査할 事案의 범위와 調査를 시행할 委員會등을 기재하여 要求議員이 連署한 書面(이하 “調査要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議長은 第2項의 調査要求書가 제출되면 直ちに 本會議에 보고하고 交涉團體代表議員들과 協議하여 調査를</p>	<p>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감사) ①국회는 국정전반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 동안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는 정기회 기간 중 별도로 3일 안의 기간으로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행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감사반의 편성·감사일정·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p> <p>제3조 (조사) ①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의 특정사안의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조사요청은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록하여 요청의원이 연속서명한 서면(이하 “조사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요청서가 제출되면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p>

【부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순화조문대비표

<p>시행할 特別委員會를 구성하거나 해당 常任委員會(이하 “<u>調査委員會</u>”라 한다)에 <u>회부하여 調査를 시행할 委員會를 決定한다.</u> 이 경우 國會가 閉會 또는 休會중일 때에는 第2項의 調査要求書에 <u>의하여 國會의 集會 또는 再開의 要求가 있는 것으로 본다.</u></p> <p>④調査委員會는 調査의 目的, 調査할 事案의 범위와 調査方法, 調査에 필요한 期間 및 所要經費등을 <u>기재한 調査計劃書를 本會議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調査를 시행한다.</u></p> <p>⑤本會議는 第4項의 調査計劃書를 檢討한 다음 議決로써 이를 <u>승인하거나 返戻한다.</u></p> <p>⑥調査委員會는 本會議로부터 調査計劃書가 返戻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本會議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p> <p>第4條 (調査委員會) ①第3條第3項의 特別委員會는 交涉團體議員數의 比率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調査에 <u>참여하기를 거부하는 交涉團體의 議員은 제외할 수 있다.</u></p> <p>②第1項의 特別委員會는 委員長 1인과 각 交涉團體別로 幹事 1人を 互選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p> <p>③調査委員會의 委員長이 事故가 있거나 그 職務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調査委員會가 活動하기 어려운 때에는 委員長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交涉團體所屬의 幹事중에서 所屬議員數가 많은 交涉團體 소속인 幹事의 順으로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p> <p>④調査委員會는 議決로써 國會의 閉會중에도 活動할 수 있으며 調査와 相關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要求하거나 調査를 위한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要求하는 경우에는 議長을 濫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第5條 (小委員會등) ①監査 또는 調査를 行하는 委員會(이하 “<u>委員會</u>”라 한다)는 委員會의 議決로 필요한 경우 2人이상의 委員으로 別도의 小委員會나 班을 구성하여 監査 또는 調査를</p>	<p>행할 特別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u>붙여 조사할 위원회를 決定한다.</u> 이 경우, 國會가 폐회 또는 휴회 <u>중이면</u> 제 2 항의 조사요구서에 따라서 國會의 집회 또는 재개회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④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록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한다.</p> <p>⑤본회의는 제 4 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p> <p>⑥조사위원회는 본회의로부터 조사계획서가 되돌려 보내지면, 똑같이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p> <p>제 4 조 (조사위원회) ①제 3 조 <u>중</u> 제 3 항의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u>중</u> 의원수의 비율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p> <p>②제 1 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p> <p>③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우면,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u>중</u> 소속의 간사 <u>중</u>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④조사위원회는 國會의 폐회 <u>중</u>에도 활동할 수 있음을 의결할 수 있으며, 조사와 相關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要求하거나 調査를 위한 證人·鑑定人·參考인·참고인의 출석을 要求하는 경우, 의장을 濫用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 5 조 (소위원회등) ①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u>중</u> 이상의 위원으로 別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하게</p>
---	--

<p>施行하게 할 수 있다. <u>위원회가 常任委員會인 경우에는 國會法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常設小委員會로 하여금 監査 또는 調査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u></p> <p>②第1項의 小委員會나 班은 같은 交涉團體所屬 議員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p> <p>③第1項의 小委員會나 班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國會法 또는 이 法의 委員會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p>	<p>할 수 있다.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경우, <u>국회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상설 소위원회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u></p> <p>②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p> <p>③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은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u>국회법 또는 이 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u></p>
<p>第6條 (事務補助者) ①監査 또는 調査에는 事務補助者의 補助를 받을 수 있다. ②事務補助者는 專門委員 기타 國會事務處 所屬職員과 交涉團體所屬의 政策研究委員으로 한다. 다만, 특히 <u>필요한 경우에는 監査 또는 調査의 對象機關의 소속이 아닌 專門家등을 事務補助者로 위촉할 수 있다.</u></p>	<p>제6조 (사무보조자) ①감사 또는 조사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u>그 밖에 국회 사무처 소속직원과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u> 다만, 특히 <u>필요하면</u>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p>
<p>第7條 (監査의 대상) 監査의 對象機關은 다음 각號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國家機關 2. 地方自治團體중 特別市·廣域市·道. 다만, <u>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u> 3.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韓國銀行·農業協同組合中央會·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4. 第1號 내지 第3號의의 地方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監査院法에 의한 監査院의 監査對象機關. 다만, 이 경우 本會議가 특히 필요하다고 議決한 경우에 한한다. 	<p>제7조 (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조직법』, <u>그 밖에 법률로 설치된 국가기관</u>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u>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u>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농업협동조합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u>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만 포함된다.</u>
<p>第7條의 2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는 2 이상의 委員會가 合同으로 班을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p>	<p>제7조의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의 <u>감사는 2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행할 수 있다.</u></p>
<p>第8條 (監査 또는 調査의 限界) 監査 또는 調査는 개인의 私生活를 침해하지</p>	<p>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p>

【부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순화조문대비표

<p>나. 繫屬중인 裁判 또는 搜查중인 事件의 訴追에 關여할 目的으로 行사되어서는 <u>아니된다.</u></p> <p>第9條 (調查委員會의 活動期間) ①本會議는 <u>議決로써</u> 調查委員會의 活動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②本會議는 調查委員會의 中間報告를 받고 調查를 長期間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議決로써</u> 調查委員會의 活動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③調查計劃書에 調查委員會의 活動期間이 確定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活動期間은 調查委員會의 調查結果가 本會議에서 議決될 때까지로 한다.</p> <p>第9條의 2 (豫備調查) 委員會는 <u>國政調査를 하기 전에 專門委員 기타 國會事務處 所屬職員이나 調查對象機關의 소속이 아닌 專門家등으로 하여금</u> 豫備調查를 하게 할 수 있다.</p> <p>第10條 (監査 또는 調查의 方法) ①委員會·第5條의 小委員會 또는 班은 監査 또는 調查를 위하여 <u>그 議決로</u> 監査 또는 調查와 關連된 報告 또는 書類의 제출을 關係人 또는 機關 <u>기타에</u> 要求하고,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要求하고 檢證을 行할 수 있다. 다만, 委員會가 監査 또는 調查와 關連된 書類提出要求를 하는 경우에는 在籍委員 3分の1 이상의 <u>요구로</u>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한 書類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데이터·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u>요구할</u> 수 있다. ③委員會(第5條의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第1項의 증거의 採擇 또는 증거의 調查를 위하여 聽聞會를 열 수 있다. ④第1項의 要求를 받은 者 또는 機關은 <u>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關한法律에서 특별히 規定한</u> 경우를 제외하고</p>	<p>나. 계속V중인 재판 또는 수사V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u>안된다.</u></p> <p>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연장을 <u>의결할</u> 수 있다. ②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u>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단축을 의결할</u> 수 있다. ③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u>확정되지 않은 활동기간은</u>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p> <p>제9조의 2 (예비조사) 위원회는 <u>국정조사V전에</u> 전문위원, <u>그 밖에</u> 국회V사무처 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V등으로 예비조사를 시킬 수 있다.</p> <p>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은 <u>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u> 의결로 <u>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등에 요청하고,</u>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u>요청</u>하고 <u>검증을</u> 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u>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V요청을</u> 하려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u>요청으로</u>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데이터·자기디스크, <u>그V밖에</u>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u>요청</u>할 수 있다. ③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u>청문회를</u> 열 수 있다. ④제1항의 <u>요청을</u> 받은 자 또는 기관은 『<u>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u>』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p>
---	---

<p>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u>위원회의 檢證 기타의 活動에 協調하여야 한다.</u></p> <p>⑤ <u>監査 또는 調査를 위한 證人·鑑定人·參考人的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는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p>第11條 (監査 또는 調査의 場所) <u>監査 또는 調査는 委員會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國會 또는 監査·調査對象現場이나 기타의 場所에서 할 수 있다.</u></p> <p>第12條 (公開原則) <u>監査 및 調査는 公開로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로 달리 정할 수 있다.</u></p> <p>第13條 (除斥과 回避) ① <u>議員은 직접 利害關係가 있거나, 公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事案에 한하여 監査 또는 調査에 참여할 수 없다.</u></p> <p>② <u>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第1項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議決로 당해 議員의 監査 또는 調査를 중지시키고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監査 또는 調査하게 하여야 한다.</u></p> <p>③ <u>第2項의 措置에 대하여 당해 議員의 異議가 있는 때에는 本會議가 議決한다.</u></p> <p>④ <u>第1項의 사유가 있는 議員은 그 事案에 한하여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監査 또는 調査를 回避할 수 있다.</u></p> <p>第14條 (注意義務) ① <u>監査 또는 調査를 할 때에는 그 對象機關의 機能과 活動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機密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u></p> <p>② <u>議員 및 事務補助者는 監査 또는 調査를 통하여 알게 된 秘密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u></p> <p>第15條 (監査 또는 調査結果의 보고) ① <u>監査 또는 調査를 마친 때에는 委員會는 지체없이 그 監査 또는 調査報告書를 작성하여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u>第1項의 報告書에는 監査 또는 調</u></p>	<p>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응하여야 하며, <u>위원회의 검증 등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u></p> <p>⑤ <u>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 등의 절차는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u></p> <p>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u>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u></p> <p>제12조 (공개원칙) <u>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다르게 정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u></p> <p>제13조 (배제와 회피) ① <u>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안의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u></p> <p>② <u>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시키는 의결을 하여야 한다.</u></p> <p>③ <u>제2항의 조치에 해당 의원이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가 의결한다.</u></p> <p>④ <u>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안의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u></p> <p>제14조 (주의의무) ① <u>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분명하게 방해되거나, 기밀이 세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u></p> <p>② <u>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세어나가게 하여서는 안된다.</u></p> <p>제15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보고) ① <u>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즉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의 보고서는 감사 또는 조사</u></p>
--	---

【부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순화조문대비표

<p>査의 <u>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重要根據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u></p> <p>③第1項의 報告書를 제출받은 議長은 이를 <u>지체없이</u> 本會議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議長은 委員會로 하여금 中間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p>	<p>의 <u>과정과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록하고 중요</u> √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p> <p>③제 1 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u>즉시</u>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의장은 위원회에 <u>게</u> 중간보고를 <u>시킬</u> 수 있다.</p>
<p>第15條의 2 (關係行政機關에 대한 지원요청) 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國政調査期間 및 資料의 부족 등으로 <u>인하여</u> 調査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u>인정되는 경우</u>나 事前調査가 필요한 경우에는 <u>그</u> 議決로 監査院등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人力, 施設, 裝備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u>없는 한</u>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5조의 2 (관계 √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국정조사 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u>조사</u>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u>사전조사가 필요하면</u> 의결로 감사원 √ 등 관계 √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 √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u>없으면</u> 응하여야 한다.</p>
<p>第16條 (監査 또는 調査結果에 대한 처리) ①國會는 本會議의 議決로 監査 또는 調査結果를 처리한다.</p> <p>②監査 또는 調査結果 政府 또는 該當機關의 是正(關係者の 問責등을 포함한)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u>있을 때에는</u> 國會는 <u>그</u> 是正을 요구하고, 政府 또는 該當機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u>인정되는</u> 사항은 政府 또는 該當機關에 移送한다.</p> <p>③政府 또는 該當機關은 第2項의 是正要求를 받거나 移送받은 사항을 <u>지체없이</u> 처리하고 <u>그</u> 결과를 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國會는 第3項의 처리결과보고에 <u>대하여</u> 적절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p>	<p>제16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처리) ① 국회는 <u>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본회의의 의결로</u> 처리한다.</p> <p>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 √ 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 √ 등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u>있으면</u>, 국회는 <u>시정을</u> 요청하고, 정부 또는 해당 √ 기관에서 처리함이 <u>타당한</u>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 기관에 이송한다.</p> <p>③정부 또는 해당 √ 기관은 제 2 항의 <u>시정요청</u>을 받거나, 이송 √ 받은 사항을 <u>즉시</u> 처리하고, <u>결과</u>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국회는 제 3 항의 <u>처리결과보고</u>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第17條 (懲戒) 監査 또는 調査를 하는 議員이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除斥事由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u>回避하지 아니</u>하거나,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注意義務에 위반한 때에는 國會議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懲戒할 수 있다.</p>	<p>제17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에 따른 배제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u>회피하지 않거나</u>,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u>위반하면</u>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p>
<p>第18條 (國會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p>	<p>제18조 (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u>필요한</u>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p>